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제326회국회 (임시회)

국회사무처

- 일 시 2014년7월8일(화)
-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사청문회

심사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사청문회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사 청문회

○위원장 김영주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 관 이기권)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 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문제, 노사 간의 대립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용과 노동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 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사관계 개 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 정책을 이끌어 갈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 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기권 장관후보자가 우리 나라의 고용과 노동 정책 분야에 대한 비전과 의 지를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소신 있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과 준법성은 갖추고 있 는지를 검증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통과의례 수 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 은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 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기권 노동 부장관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 로 중계될 예정이며 관련 단체 및 기관은 물론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하고도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30일 의결한 인사 청문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이기권 노동부장관후 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고 답 변을 듣도록 하되 오전에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보충질의에 앞서 네 분 의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후보 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시작하 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권 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선서, 공직후 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2014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이기권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 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투철한 소명의식과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 주야 우리나라 고용노동 현장을 지켜 주시고 고 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적으로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 을 드리면서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제 생각과 소 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최근 경력단절여성, 실직하는 중·장년층, 희망을 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고는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하며 경제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나갈 것이라는 믿음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저성장·저고용에 일자리 미스매치까지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적지 않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맡겨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이라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저는 고용노 동부장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가능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 자 하는 국민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적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경제·산업·복지·교육 정책 등의 중심에 일 자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일 자리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 총장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현장 중심, 산업수요 맞춤형 으로 혁신하고 청년이 일하면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려 나가겠 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특히 전일제 고용의 시간선택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일·가 정 양립형 일자리를 누리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 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등 법정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하여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한편 기업이 무분별한 하도급보다는 직접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에서 마음껏 역 량을 펼칠 수 있으려면 2·3차 협력업체의 일자 리 질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에서 떠나게 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자영업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로 제 2의 직업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분 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보호 방안도 관계부처 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원청의 안 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산재 예방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미래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가능케 해 줄 신고용노동 질서를 노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고용여건과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 문제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노사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현 안을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근원적인 대안과 실천방안을 노사와 열 심히 대화하고 토론해서 찾아내겠습니다.

단절된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를 조속히 복원하 여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 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상생과 협력 의 노사관계, 소통과 배려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천적 공동협 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업종 등에서의 다 차원적인 노사정 대화와 협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 업무에 몸담으 면서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발전과 변혁의 순간마다 함께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메카였던 울산, 그리고 광주청장 등을 보임하면서 격동의 노사관계 순간 마다 현장에서 노사와 고민을 나누었던 경험은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 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분 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

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 악하여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시절 도서관에서 밤낮없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 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줄 것인지 노심초사했었습 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일자리 행복을 찾아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 신다면 청년들의 고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0년 쿠웨이트 노무관 시절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 전쟁의 위험을 넘으며 2500여 국내외 근로자 와 교민의 안전을 책임진 경험도 있습니다. 기회 가 주어진다면 그때의 간절하고 절실했던 마음자 세로 제 한 몸 바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땀의 가치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책 하 나하나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하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 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 하면 추가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후보자님, 우선 고용노동부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감사합니다.

○민현주 위원 방금 인사말씀에서도 지적하셨듯 이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자리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최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후보자께서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후보자의 경력을 노동부 시절부터 죽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핵심부 서 중심으로 이동하셨고요. 그리고 노동부, 고용 노동부 이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의 경험이 굉장 히 짧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리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 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김대중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3년 일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노사관계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면서노사, 기타 여러 국민을 대표하는, 또 근로자를대표하는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또 울산소장, 광주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현장과 또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일한 경험들을 살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부만의 생각을 넘어서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장관이 되신다면 꼭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정과제 핵심이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래서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 올 초에도 발표가 됐고요. 청년과 여성 고용, 여성 일자리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것이 핵 심과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이것 관련해서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 이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 는 것에 대한 여러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요. 발표가 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정말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확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입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고용 관련해서 지금 15~24세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지난번 2월 달에 발 표한 국정과제회의 때 보면 일과 학습 병행제라 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 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먼저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는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해서 일을 하면서 소위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정책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조기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일자리까지 진입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조기에 직업 관련되는 교육을 투입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했을 당시에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일자리에 빨리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학교 다닐 때부터 키워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발표될 당시에 일・학습 병행제가 OECD 국가를 벤치마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직업 관련된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OECD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업중단률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 OECD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평균 진학률이 50% 정도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보다도 낮은 45%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성공적 으로 적용해 보자고 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는 고등학교 평균진학률이 99.7%입니다, 지난 3 년 평균이요. 대학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3년 평 균 71.5%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중도에 학업 을 중단하거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 도에 학업을 중단해서 그 중간에 어떻게든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학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문제이기 때문 에 일·학습 병행을 시도했던 OECD 국가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 • 학습 병행제를 지금 현장에서 실시 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노동 시장에서 첫 일자리를 찾는 것을 빨리 도와준다 기보다는 오히려 중도에 학습을 포기할 만한 요 인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이 효과가 없 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 보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 신 대로 일·학습 병행제의 우리의 한국형 제도 하고 지금 독일과 프랑스 쪽의 OECD 제도하고 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졸업한 학생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장 기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반 이쪽 학생들에게도 학업을 하면서 자기와 어떤 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학업 중간에 2~3일 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2~3일은 학교에서 이 론교육을 하는 소위 유럽형의 일 • 학습 병행제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높은 대 학의 진학률도 좀 낮아질 것이고, 또 본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일·학습을 병행했 던 기업에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거기 에서 야간이랄까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자 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일반 학교보다는 취업 특성화된 학교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 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15~19세 사이에 또는 15~24세 사 이의 청년들에게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일자 리에 취업해서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풀이, 전

체 모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닌가…… 외국 같 은 경우에는 60만 이상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 우에는 그래도 10만~20만 정도입니다, 중도 탈 락하는 학생들이요. 그래서 일 • 학습 병행제를 통해서라도 이 친구들의 취업을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것이 고 용률 70% 달성에 과연 큰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적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 로 특성화고 중심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 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학년 때부터 도입된 일ㆍ 학습 병행제보다는 졸업하기 직전인 3학년에 도 입된 일·학습 병행제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훨 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오히려 조기에 일 · 학습 병행제를 도입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 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희들이 현재 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고 조만간 특성화 고등 학교 그다음에 인문계에서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 습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때 그 조화 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 신 인성교육이랄지 풍부한 이론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으면서도 또 현장에서 배 울 수 있는 답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 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 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24세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16만 정도의 학생들이 더 취업한다고 해서 과연 70% 달성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 인가라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보다는 25 세 이상의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25세 이상이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입니 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취업아카데미 랄지 중소기업 취업인턴제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25~29세의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청년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특히 20~24세 이쪽 취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청년 취업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상당수가 먼저 취업하게 하는 제도를 함으로써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취업 방안을 더 세심하게 또학생 입장에서, 청년 입장에서 고민하는 대안들을 더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위원입 니다.

먼저 우리 당의 노동문제 전문가이시고 또 의 정활동이 대단히 뛰어난 은수미 위원님께서 순서 를 바꿔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기권 후보자께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7% 인상을 하기로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7.1% 인상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인상하기로 한 것은 다행인데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일이 시간당 8.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만 1670원, 또미국이 시간당 10.1달러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만 1890원, 그리고 영국이 1만 1250원, 호주가 1만 593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580원으로 인상해서 크게 인상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 지만 앞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크 게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독일 장관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힘들게 일하면서 낮은 보수를 받고 보호 받지도 못하는 수백만 근로자의 현실은 이제 끝 났다', 우리도 그렇게 시원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박근혜정부 들어서 경제성장률 또 물가상승률 이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개념을 새로도입했습니다. 그 이전 5년에 비해서, 그 이전 5년 동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잡아서 약5.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2%, 금년에 7.1%, 소득분배 개선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노력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반영이 돼서 그 격차를 줄여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박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대선 때 공약하시기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러한 말씀의 취지에 충실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해마다 고용노동부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부의장님.

○이석현 위원 실은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으로 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처분소득이 증가 되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갈등이 증대되고 있어요. 고 용노동부와 전교조 사이에 갈등이 갈수록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14년간 운영되던 노 조를 하루아침에 '노조가 아니다'…… 제 생각에 는 이게 무리한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보다 좀 약한 제재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조합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이 지금 한 6만 명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약 6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이석현 위원 6만 9000명.

그런데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 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해직자 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9명, 8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 6만 9000명 중에 해직자가 8, 9명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이게 노조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 교 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 장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 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그 정신에 의해서 또 교원노조법이 제정됐던 것이고요. 이 교원노조법이 노조를 규제하는 법은 아닌데, 이게 노동조합의 설립과활동을 보장하라는 법인데 거꾸로 악용되는 느낌이 지금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취지는 다 알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O이석현 위원 지금 이런 대혼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중의 하나가 저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보실 수 있도록 조언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부의장님,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게된 것은…… 저도 98년도에 교직원노동조합법이이렇게 만들어질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했고 참 보람으로 느꼈습니다. 그 법을 만드는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그 신분과 직무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특별법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현직 교사,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그런 공감대하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그 뒤로 2010년도부터 전교조 규약이나 또 이런여러 가지 상황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토록 요구를 했었고 그 시정이 받아들여지지않아서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가 할 부분은 우선 전체 국민들이 보 면 교사든 공무원이든 크게 보면 공공 부문의 안 에 있는 분들이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 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교조하고 대화를 해서 위법사항을 해소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이석현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결사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런 가치이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또 고용노동부의 임무입니다. 또 우리 국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ILO나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12일에 전국교사대회가 예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노조 전임자 복직시한이 19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미 공언한 대로 직권면직을 한다면 심각한 상태에 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정부를 설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 관련해서, 이게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5월 기준으로 지금 고용률이 얼마지요? 몇 %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65.6입니다.

○이석현 위원 70%라는 양적인 목표에만 치우쳐 가지고 혹시 고용의 질이 저하되거나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한 것을 잘 보았는데 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저희 방에 답변도 보냈더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증가된 취업자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많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주로 장년층에 서 증가했습니다. 50세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지요, 50세 이상이 많더라고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업종은 어느 업종에서 취업자 가 증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조업 그다음 에 사회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종합해서 본다면 고령자 위주로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서비스 부문에서 저임금 일 자리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70% 달성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된다, 후보자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질을 높이는 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질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고용률 70%도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 다.

다행히 지금 현재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상용직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도 일자리는 41만 개 늘었지만 상용직으로 44만 명 늘었고 또그 상용직의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여성 입장에보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원청의 성과가 2차·3차 벤더로 흘러가게 해서거기에 청년들이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여성에 있어서는 현재는 소위 채용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서 전 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 로 좋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이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유념해 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새누리당 양창영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셨던 정부정책, 고용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이 매년 47만 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2017년까지 정부의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행정·국방 같은 이런 공공 부문에서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은 한 12만 4000명 정도, 전체 신

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한 5.2%로 노동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양창영 위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선 독일이나네덜란드 영국에서도 5년간의 고용률을 우리만큼한 5%, 6%를 끌어올려서 70%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70%,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제도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이 숫자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모든 각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선도를 하고 이 제도들 이 민간 부문으로 퍼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 회가 일자리의 질을 높여 주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업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가장 소중한 가 치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면 저는 그것도 가능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창영 위원 2013년 신규 일자리가 38만 6000 개로 증가해서 목표치 대비 9만 개를 달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 전망을 보면올해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1~5월까지 평균이 63만 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전망치도 있고 해서 아마 고용 증가율이 상반기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금년은 목표 달성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심히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높은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도전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민간 부문 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 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도 기본적으로 민간 부 문에 있어서는 소위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그게 매 우 절실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에도 약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원청의, 대기업의 성과가 1차 벤더를 넘어서 2·3차 벤더 로 흘러들어가서 2·3차 벤더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향상이 되어서 거기에 청년들의 취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좀 더 큰 노사 정 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 내에서 또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지난해, 올해 고용의 양은 증가 되었지만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 용의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는데 만약 장관으로 임명 되신다면 양과 질을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을지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말씀올린 대로 양과 질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높여져야 양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를 시행한 뒤로 전체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도 향상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 다.

이 부분이 만약에 채용형 시간선택제를 넘어서 서 우리 기업에서 전환,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이 육아나 학습 때문에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서너 시간 일을 하면서 계속 일하는 자리로 유지 가 된다면 그 자리에 다른 또 그 정도의 전문성 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 하면 일자리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요. 또 청년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도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면 질도 개 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양창영 위원 이어서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실

시해서 총 60개의 사업에 적용하였고 또 다수의 정책개선점이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양창영 위원** 동 제도에 대한 효과를 후보자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리 정부가 재 정을 투입할 때 일자리 중심에서 봐서 가급적 양 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을 우 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를 통한 국민행복에 맞다고 봐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연구역량도 높여 가고 앞으로는 예산사업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이 부분도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금년에 는 15개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점차적으로 넓혀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지난해에도 고용영향평가를 받은 기업이 작년에 15개였던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15개로 알 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그런 고용률 제고가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직까지는 부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담하 는 센터도 만들고요,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에…… 해당 지금 주관하고 있는 연구기관뿐만이 아니고 정부 인문사회 전체 연구기관을 통합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말씀올 린 대로 주요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도와 법률까 지도 영향평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 져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최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양창영 위원 하지만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 황인 거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산 요구를 할

때 고용영향평가를 사전에 이렇게 가져오도록 제 도화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한 제도화 부분에서 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내에서 영향평 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이 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 고 있는데 제도의 지원과 함께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인재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관계법에 의해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 고 정부의 고용영향평가하고 이렇게 상호 연계해 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앞으로 이 고용영향평가제도가 활성화되면 많은 사업에 이를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인력 등 인 프라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말씀올린 대로 중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문사회 연구기 관들 그다음에 민간의 연구기관까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의 영향평가를 정확히 하고 반영하는 게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내 에 있는 정부・민간의 연구역량을 가급적 체계화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이제는 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양창영 위원 어려운 시대상황일수록 고용이 곧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국가예산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고용영향평가제도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정부 전체적으로 고용 중심의 복지, 소위 맞춤형 고용, 일자리

를 통한 복지라는 큰 개념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부분도 그 연계망을 점차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용영향평가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노력을 더 한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은수미입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태희 전 장관이 주도했던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하고 결국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서 발탁, 승진되어 이 자리에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의혹에 대해서오늘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기대 총장지원 시 허위기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그것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한기대 총장 지원 시 후보자께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에서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한 내용 중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에 뭐라고 쓰 셨느냐 하면 '원청인 대기업이 가급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상해고제도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판정을 했다' 그것을 다 자 신의 경력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없었어요. '없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축약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지노위 위원장시절에 많은 조정업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업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주는 문제로 노사 간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 경력서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통상해고제도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판정을 했다'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나 판정을 했느냐? 그 자료 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중요한 근 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류 및 면접심사를 1 순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은수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없는 내용을 '있다, 했다'라고 적시하셨느냐고요. 이거 허위기 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연구를 두세 가 지 주제로 했습니다. 그때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가지고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회 입장 에서 굉장히 판정이 어려운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자료는 바로 추 후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판정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하나는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연구 및 판정. 왜냐하 면 서울지노위의 핵심은 판정입니다. '판정을 했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정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판정은 기간제 나 파견에 있어서 소위 차별적 요소를 가급적 넓 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 서 직접고용으로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해서……

○은수미 위원 잠깐만, 다시요.

지금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은수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주일간 연구 및 판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없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없으면 인사 청문회에서 허위기재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은수미 위원** 저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불가 할 게 아니 라, 연구 및 판정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 이 것은 명백한 허위기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관련 판례와 연 구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만약 없으면 제가 점심…… 다음 오후까지 이거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최대한 빨

리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없으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시 고요.

다음으로, 우선 전교조 죽이기에 공모한 의혹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서울지노위 위원장으로 발령을 받 으셨어요. 그런데 당시 발령을 받았을 때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 로 일하면서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 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해 좌천성 인사였다', 이것은 소문이었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 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지노위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직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의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면서 서울지노위 에 의결 요청을 했고요. 2010년 3월 후보자께서 심판부 의장으로 임태희 장관 말대로 위반이라는 의결을 해 주십니다. 이게 현재 전교조 사건의 발단이었고요, 전교조 죽이기 시작이었습니다. 그 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것이 의혹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게 이 판결 내용입 니다.

당시 노동부는 전교조 규약만이 위반이라고 시 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자유교원조 합의 규약도 그렇다. 그러니 시정명령 의결을 해 달라'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피해구제)에 보시 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조항이었어

그다음에 자유교원조합 규약 제52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 생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교조는 위법, 자유교원조 합은 적법!

그것도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자유교원조합 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한 심문까지 하셨더군요. 이것은 명백하게 같은 조항에 대해서 다른 판정 을 냈고 그 결과 시정명령 그리고 지금의 전교조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서

결국 전교조 죽이기 한 후보자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제가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말 씀은 사실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교조에 관련된 사항이 6개 위반한다고 들어 왔고요······

-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가 질의는 굉장히 많고 답변은 짧아야 되니, 같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는 위법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적법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같은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금 제가 그 조항만을 놓고 보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요, 아마 저것뿐만 아니고 저는 위원장이고 두 분의 위원들, 법률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검토 했는데 자유교원노조의 경우는 그와 연관된 하위 규정에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 실현성이 불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위법으로 보지 않 았고요……

- ○**은수미 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전교조 관련 부분은 위법을 해서······
-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한 가지만 말씀 을 드리면……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 하위규정이 없었다라고 근거를 대셨는데 하위규정은 전교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52조가 적법이면 전교조의 제9조도 적법입니다.

왜냐하면 규약별로 몇 가지 규약에 대해서 다심사를 하셨고요, 각각 위법 적법을 회의록에 기재하셨어요. 그러면 9조는 9조대로 하위규정이 없었습니다. 52조도 하위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친절하게 자유교원조합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이 없다'이렇게 회의록에 기재를 하셨더군요. 전교조도 없었습니다. 차별이지요? 명백한 기획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과 심문록을 구체적으로 살 펴봐야……

○은수미 위원 제가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 ○은수미 위원 제가 봤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시정명령은 전교조가 받아들여서, 퇴직자 부분을 제외하고 전교조에 6개 시정명령이 갔었는데 5개는 전교조 가 시정을 했었습니다.

○은수미 위원 2010년에 어쨌든 이게 규약 위반 이라는, 최초의 시정명령 위반이라는 의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교조 사태를 얘기할 때 항상 서울지노위 판결부터 얘기가 나와요. '위반이었다', '위반이었다', '위반이었다', '위반이었다', '위반이었다', 그런데 잘 다시……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유교조,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 자유교조를 포함한 3개 교원단체 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참석해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임태희 전 장관, 서울지노위 이기권 그리고 한나 라당 조전혁, 정부와 여당이 전교조를 제외한 다 른 데는 다 보호를 하고 전교조를 죽이기로 결정 을 내린 모양이다'이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또 전교조뿐만이 아니고 한교조, 대한교조 등 4개 노조에 대한 의결사건이 요청이 와서 그 위원회는…… 이것은 법에 의한 판단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 ○**은수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 잖아요. 법에 의한 판단을 하는데 왜 하나는 위법이고 왜 하나는 적법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심문과 정의 구체적인 사실과 답변과정을 봐야……
- ○**은수미 위원**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 렸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은수미 위원** 깊이 살펴보셨어야지요, 그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때 봐서 전교 조가 시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은수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주** 예, 많이 하십시오.
- ○은수미 위원 그래서 공조를 하셨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희들은 법에 의한 판단을 했고요.

○**은수미 위원** 그리고 공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86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는 의결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참고인을 불러 진술하게 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이를 진행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하느라, 임태희 전 장관의 입맛에 맞춰 주느라 반론의 기회조차 봉 쇄하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통상 의결사건은 법률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참고인도 부르고 합니다. 거기에 노동계를 대표 하는 위원도 오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오 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충분히 관련된 사항을 말 씀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은수미 위원** 전교조 판결이 지금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입니까? 이것 때문에 OECD 회원국, 다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참고인 진술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 해서 '통상적인 것이었다'라고 대답을 하면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교조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세요? 본 인이 시작하신 문제, 결자해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자스민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님께 질 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성·장애인·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노동현안들을 감안을 할 때 막중한 책임감 을 느끼실 거라 봅니다.

모두발언에서 보니까 이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를 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 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자스민 위원** 하지만 여성문화네트워크 전국

30~40대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워킹맘 고통지수'에 따르면 워킹맘의 10명 중에 9명이 일과 가정, 육아의 병행을 고통스럽게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통의 주된 원인은 회사의 제도와 분위기 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워킹맘의 92%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언제 도입되었 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2008년에 도입 되어서 2012년에 3일에서 5일로 하면서 이틀 늘 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 용할 수 없는 불행한 현실이 특히 출산 · 육아와 관련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일·가정의 양 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체 100곳의 인사담당자 중 96.4%가 출산 전 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 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기업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많은 수의 남성들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본인의 유급휴가를 이용해 쉬는 형편이라고 합니 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휴가 이 현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거들어야 된 다는 분위기가 아직 좀 덜 조성되어 있는 것 같 고요. 또 기업에서도 제도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당 이 부분은 신청이라기보다도 꼭 사회 전체 를 위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먼저 앞서 나아가야 훨씬 더 쉬울 것 같 은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부여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청구 자체를 못 하는 현실,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현실

이것을 바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자스민 위원 유럽 선진 사례를 보면 사실상으로는 정해진 기간에 100%는 아니더라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된 일정한 기간을 그중에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 또는 그런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 선진 사례를 보면 자녀 출산 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당연시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일·가정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 변화, 노사문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의 역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지적 공 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이라는 제도는 각 각 가정의 일을 기업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이런 것을 알려 주면 거기에 합당한 휴가를 주자는 의미의 신청주의로 보고 있고요. 어떻든 기업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모가……

O이자스민 위원 일단 훨씬 더, 사실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와이프가 임신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은 것인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조금더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자스민 위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 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그 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만 하고 있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실질적으로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알겠습니다. 고용부도 일·가정 양립 문화 형성에 많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더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된 정책을 보면 대부분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내 분위기, 휴가 이후 승진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 1000개 가운데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있습니다. 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률 63.4%에 반해 비정규직은 반에 불과한 37%만 사용하고 합니다. 특히 출산휴가 사용후 정규직은 10명 중 4명이 복귀하였지만 비정규직은 겨우 1.5명만이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덧붙이자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보면 고학력 또는 중산층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교육·훈련 과정이 부족합니다.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님의 견해와 경력단절여성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했지만 그게 100% 활용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 출산이나 육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휴가를 가고 휴가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소중한 공동적인 가치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거의 100% 활용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자스민 위원 아마 사회에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그 문화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확산을 시키면서 그것은 고용 노동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도에 도입한 후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후보자는 1982년 노동부에서 공 직생활을 시작으로 2004년 당시에는 노동부 공보

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 고용허가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 니까? 성적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평점을 주시겠 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전에 시행했 던 산업연수생제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 다. 우선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올 때 입국비용이 현저히 낮 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불법체류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 는 외국인들에게 인권침해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 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하지만 노동계나 학계에서는 고용허가제는 누더기가 된 제도이고 미등록 체류 자는 줄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습 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서 애초 3년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 '숙 련공이 필요하다'는 사업주의 요구하고 '적응할 만하니까 떠나야 한다'는 근로자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체류기간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 지요?

4년 10개월 그리고 재입국하여 취업될 경우 또 4년 10개월, 최장 9년 8개월의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정주화를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사 실상 정주화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때 정부 내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5년을 넘으면 정주화 가능성이 있어서 3년을 기본으로 하되, 또 해당 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원하고 본인도 하게 되면 1년 반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4년 8개월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고요, 일단 4년 8개월 하게 되 면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운영해 서 아주 소수만 재입국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서 부터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정주화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자스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 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위원님 지 적하신 부분은 세심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자스민 위원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동 안 계속해서 짚어갈 생각이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제인데요, 올해 1 월 법 개정으로……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자스민 위원** 올해 1월 법 개정으로 출국만 기보험금 지급시기가 기존 퇴직한 날로부터에서 출국 후 14일 이내로 변경되었다고, 당장 이번 달 29일 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하였지만 보험금 이 사실상 퇴직금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많은 부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경우에 어떻든 퇴직 금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게 출국만기보 험이라고 해서 도입이 됐고요. 그 지급시기와 연 관해서는 어떻든 외국인 문제가 국내에 있는 문 제 중에 불법체류 또 불법체류가 되면 인권침해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가급적 줄 이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넓혀 주는 게 좋겠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기보험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 14일로 이렇게 제한을 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자스민 위원** 일단은 29일 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보험금 수령에 관련되어 조 금만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시행 이후 에 보완이 필요하면 또 검토해 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자스민 위원**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임명되신 다면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알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 입니다.

방금 이자스민 위원님께서 출국 후 퇴직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미 불법체류 문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부분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필요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정부 입장이? 맞나요, 안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기본 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하나 위원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뭔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왜냐하면 중소 기업에 주로 외국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체불이랄지 퇴직금이랄지 건강이랄지 이 부분 을 다 이렇게 주는 게 어려워서……

○장하나 위원 그거랑 출국한 다음에 주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출국한 다음에 주면 그 상황이 좋아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확보도 될 수 있고……

○장하나 위원 그 전에도 퇴직금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퇴직 후 14일이면 주던 걸 퇴직이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야 그 후에 14일 후에 주겠다로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금액 다 있었고요. 좀 잘 알고 대답을 하시고요.

그런데 퇴직 후로 한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불 법체류자가 될까 봐,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 출국 후에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편의상 도입한 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이런 출국 후 지급제도를 그렇게 환영만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대책을, 지금 대책 갖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세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 라 노동시장에 원해서 오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도입해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차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도 차별화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하고, 이번에는 확실히 불법체류 해소라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고려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퇴직금 체불, 아무 대책도 없이 도입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떤 대답도 못 들었고 지금 장관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진짜 해야 됩니다. 하고 대책 마련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법 개정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고서는, 이 명확한 노동자 간의 차별을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책 강구를 좀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질의하려던 건 그 부분은 아니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장관님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랄까요 제가 중앙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보고 글 쓰셨던 것을 조금씩 참고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현재 정부 그러니까 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과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강조하셨던 것이 근로시간 단축 부분하고 또 시간제 일자리 부분하고 그렇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에 쓰셨던 건데요 기억이 나실 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셋째, 괜찮은 여성 파 트타임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많아져야 된다', 왜 하필이면 여성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리 여성고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로 인해서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거의 200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 밑에 보면 '지속적인 일자리 하나를 둘이 나누자'이런 얘기 되어 있거든요. 노동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파트타임이 주로 밖에서 채 용하는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다 그렇게 채용식으로 하고 계시 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금은 190만 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시간제 일자리 가 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인식을 세뇌시킬 수가 없는 거예 요. 실제로 좋은 일자리면 국민들이 '아, 시간제 일자리도 좋구나' 받아들여요. 현재 너무 열악하 니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일하는데 정말 육아도 하 고 싶고요 여러 가지 필요해요. 풀타임이라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굳이 그대로 일하는 이유는 월 급이 적어서예요. 지금도 적은데 줄여서 그 돈 받고 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가사를 꾸려 나 가기 위해서는 사실 가능하면 더 일하고 더 돈 벌고 싶을 정도로 여성 일자리들이 열악합니다. 남성들보다도 임금 적은 것도 아시고 근로시간 긴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쪼개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일 반쪽으로 하면 월급은 다 주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일을 하다가 육아나 다른 사 정이 있어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그런 분 위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 서....

○장하나 위원 그런데 그걸로 고용률 70%는 어 렵지 싶고요 만약에 정말 고용률 70%를 달성하 기 위해서 시간제를 정부가 아주 주도적으로, 지 금은 월 60만 원 정도로 해서 임금 보장까지 하 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시간제 일자리 늘리려 고 늘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피해자들은 여성 노 동자들, 그중에서도 정말 불안하고 월급도 적은 여성 노동약자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이 부 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 래서 기업에서 여성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1년 외에 그 이후로도 자발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까지는 내가 반나절은……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월급은 충분히 주실 거 냐고요,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런 부분에 대

한 제도적인,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이 사회적으로 소중한 가치라 고 생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의 제도 정착이 우리 사회 의 주 5일제 근무 정착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분위기 형성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전체의 또 가 정의 고용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 맞으신 말씀 이시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고 용률 70%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일자리 2개로 쪼개면 당장 1개가 2개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런 의미는 아 닙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아니라고 하실 텐데 세심히 잘 안 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도 학교에 있 으면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정의 육 아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필요하면……

○**장하나 위원** 지금 그러면 전환형, 공무원들은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그 안전하다는 공무원 일 자리는…… 여성 공무원들이 전환형 시간제 얼마 나 신청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렇기 때문에 요, 아직은 제도……

○장하나 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다들 신청합니까? 돈벌이가 다 걸리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런 부분 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도는 너무 좋은데 두 가지 선 택 하는 거지요. 월급 똑같이 주면 당연히 육아 한다고 쉬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지적 맞 습니다.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 전체 적으로.....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고려하시 고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70% 달성하려고 그렇 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 달라는 주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는. 계속 지켜보겠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OECD 평균하고 비교해서 너무 미달인 게 많지만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사회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임금 말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 사회부조 다 들어가겠지요. 그런 사회임금이 OECD 평균은 총 가계운영비에서 32% 정도가 사회임금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임노동, 임금이겠지요, 노동임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사회임금이 8%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시간제일자리가 막 좋고, 이 칼럼만 보아도 네덜란드독일 등등 이렇게 다른 나라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률 70% 달성도 했고 또 그런 나라의 경우에 좋은 시간제일자리들 선례가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많이들 강조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한국에 도입되겠냐는 겁니다. 일 안하면 당장에 사회임금이라든가 다른 사회안전 망이 없잖아요. 대체할 게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 서 있는 일자리도 아득바득한데 그것을 반쪽으로 나누라는 게 얼마나,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 혹하기도 하고요. 생존권 박탈의 그런 의미가 있 는지 좀 더 신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종합적으로 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또 하나 주장하신 것 중에 통상임금 확대 등등으로 기업들이 뭐랄까요 고용부담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직무성과 중심의 새로운임금체제 개편, 그러니까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을 좀 바꾸자라는 것……

이렇게 여쭤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노동부에서 시범적으로 또는 공직사회에서이러한 호봉제 탈피를 시도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필요하시다면 법 개정을 논의해 볼까요, 국회에서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난번에 정년 60세 할 때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가 입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장하나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정년 60세 보장을 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 부문

도.....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고용률 70% 달성해야 되고 일자리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정부가 아니면 노동부가 이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전체적으로 임 금수준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임금수준을 유지하거나 임금수준을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도 전반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되어야 늦게까지 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호봉제 탈피하는 것이 임금수준 하락을 뜻하는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의외네요. 감사하고요.

장관후보자님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노동부 입 장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그때 는 밖에 나가, 제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입 장에 섰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신가요?

아무튼 그런 기존에 갖고 있던 철학을 좀 고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임금하락 없는 호봉제 탈피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제가 오후 질의때 할 텐데 약간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협체결 여부에 따라서 기관장을 면직하고 해임하고 직원임금 동결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기재부 차원의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공공기관 평가 를 하는 데 노무관리도 몇 점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일단 공공기관 방만경영 얘 기가 나와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장관님들이 얘기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해요. 장관님은 말씀 잘하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는 그 부분 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 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방만경영이 해소돼야 되는데 대통령께 낙하산 좀 하지 말고 이런 것 하자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 거면 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경영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노력을 할 건데 대통령이 계속 낙하산 인사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상화하자 그래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 시오.

○장하나 위원 장관님이 좀 확실히 그런 뜻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관피아 개선 등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걸 로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朱永順 委員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개인의 신상 검증도 중요하지 만 장관으로서의 정책 수행능력과 자질을 따져 보는 자리가 돼야 하므로 본 위원은 고용노동 분 야의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 문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산업안전 문제 등을 중심 으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고용노동 분야에는 고용과 관련한 이슈 외에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과 같은 근로기 준에 대한 이슈, 산업안전에 대한 이슈 등이 혼 재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저소득, 양극화, 복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 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저도 위원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朱永順 委員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 장의 국면에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어렵고 일자리와 질 문제를 해결하기도 아주 힘든 상황 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과 질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에 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에서 스스로 나서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 리나라는 고용 문제로 인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고 위기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 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〇朱永順 委員 중소기업계에서 최근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지난 5년 간 전체 근로 자 수가 약 230만 명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서 중 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8%, 대기업이 16.2%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성이나 청년 고 용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 부에서는 중소기업 고용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현재의 우리 중소기업 상 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수출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3분기 신용위험 도가 전분기 대비 6%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 업의 상황이 이러한데 기업 스스로 고용의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은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민간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산업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기업의 운영과 연관된 규제들을 완화해 서 기업들이 좀 편하게 성장하고 그것이 일자리 를 늘리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 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 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 업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기술 지원 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지원을 해서 거기에 괜 찮은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청년 문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〇朱永順 委員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업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해 결해 주고 아울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설 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〇朱永順 委員 노사관계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 이 강조되어 균형과 합의점을 찾아가듯이 우리나 라의 고용관계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균 형을 잘 맞추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고용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일자리를 통해 근로자와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장관 이 되시고 나면 고용과 이를 통한 복지의 실현 문제에 대해 말단부터 차근차근 잘 챙겨봐 주시 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위원님, 기 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차곡차곡 새겨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〇朱永順 委員 다음에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 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후보자는 자 기 논문 표절 의혹부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인 기업체에 대한 주식 거래, 한기대 총장 재직 시절의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전관예우성 특혜 제공 논란 등과 같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런 점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상세히 소 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선 저도 이번 후보자가 되어서 검증을 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 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의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논문 표절에 관련해서는 제가 2002년도에 논문을 쓰겠다라고 제 박사과정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2003년 2004년 미국 연수 하는 기간에 크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 와서 논문지도 교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논문제목이, 한국 노사관계 체제에서 정부가 어 떤 역할을 하면 바람직한지 역할 모형을 정립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국제사회에 있는 몇 가지 모형에 대해서 그런 모형들이 우리 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한번 학계에 발 표를 해 봤으면 좋겠다, 또 그때는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각 학진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앞부분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 리나라 모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뒤로 윤리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자기표절이니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표절이라 하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논문을 다른 데 또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논문을 마지막 제출할 때 앞부분이기는 하지만 학진에 발표했던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단 한 줄을 적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관련 주식 문제는 제가 셋째 아이를 갖고 난 뒤부터. 셋째 아이가 제가 퇴직을 한 뒤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야 될 형 편이라서 아마 그런 어떤 학비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 집사람이 제 계좌와 또 집사람 계좌로 처음 에는 펀드를 하다가 주로 제가 공직을 떠난 뒤로 부터 몇 개 주식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주식이 고용부와 연관된 직업훈련기 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부 본부에서는 어떤 기관이 직업훈련기관이고, 왜냐하면 수천 개의 직업훈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방사무소에서 다 인가를 해 주 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채필 교수의 채용과 연관해서는 사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부족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 는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생활 고민도 있고 또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와 그 학교에 같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 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 는 방안 또 이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선 인문학의 대가들을 석 좌교수로 모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 런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석좌교수들에 게 좀 부담을 줄여주면서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채필 교수의 경우는 장애인이고 또 중학 교·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자신감, 도전정신 을 심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특강 등을 통해서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또 그 채용 과정도 제가 제의를 한 게 아니고 처 • 원장회의를 하면서 다른 처 · 원장들이 그런 제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가 직업훈련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일 능력 중심 사회로 가면서도 역할을 재정립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채 용을 하게 됐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날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사과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요.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공무원은 또 왜 존재하는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 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피아 척결이라고 하 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후보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 으니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 앞으로 국정에 대 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후보자가 거기에 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

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30년 노 동관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 적인 평가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인 소명 을 다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인가에 대해서는 의 문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계신데요, 제가 노피아라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도 일 부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10년 6월 이후에 노동 부 출신 고위관료 약 34명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14명이 후보자가 차 관 재직 시에 일어났습니다. 취업을 했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요, 후보자가 상사로 모셨던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을 한기대가 첫 번째 석좌교수로 임용을 했습니다. 후보자 이 전에 있었던 한기대 총장께서는, 전임 총장께서 이채필 당시 현직 장관에게 한기대의 첫 번째 명 예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지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노피아 척결하자는 의미에 서 보도자료 냈는데 고용부와 한기대가 공동으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이채필 장관으로부터 전화 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채필 장관은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채필 장관은 한기 대가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 다. 당시 한기대 총장은 지금 후보자이시고요. 한 기대가 제안해서 교수에 임용되었고 강의 운영도 한기대에서 알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서 문 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채필 살리기 해명 자료를 내셨어요.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 르고 계신다

천안 소재 대학이라서 잘 오지 않는다고 했는 데 천안 소재 대학, 전국에서 1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천안 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찾기 위한 노력 사실은 그다지 하지 않았 다고 보고요.

강의 운영, 제가 왜 노피아 얘기를 했는지 말 씀드릴게요. 한 학기에, 1학기에 무려 4시간 강의 했습니다, 이채필 장관이.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리고 2000만 원을 넘게 수령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어떤 분이 하루 일당 10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분은 단 4시간 강의하시고 2000만 원 넘게 수령했습니다.

전관예우도 이 정도면 아주 지나친 것이지요. 시간당 얼마도 아니고 10분에 85만 원씩 수령한 겁니다. 강의 운영을 한기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2학기에는 정규 과목으로 규정상 수업시수가 3 시간인데 2시간씩만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안 지 켰지요.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석좌 교수로까지 모시고 싶었던 분이니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강의가 노동부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해서 강의를 진행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이채필 장관이 직접 한 강의 별로 없습니다.

이채필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장관의 전관예우를 그렇게 지나치게 한 한기대, 전적으로 석좌교수에 임명한 이기권 후보자의 문제입니다.

국고 지원되지요, 한기대에?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한정애 위원** 학생들 등록금 받지요?

그것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이채필 교수의 역할을 계약할 때 특강 등······
-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특강인데 한학기에 딱 4시간 강의하고 2000만 원 그렇게 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내가 낸 등록금은 정말 가치 있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석좌교수였나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차츰 그런 역할 을 키워 가도록……
- ○한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지나친 전관예우를 하시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국고지원금이나 학생들 등록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후 보자가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인영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전체적으로 특강 등을, 4월 1일 날 임용이 됐기 때문에 6월까지 두 달 기간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위원님.....

- **○한정애 위원** 4월에서 6월까지 4시간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리고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실은……
- ○한정애 위원 체제를 갖추고 2학기에 정규 과목으로 해서 3시간 강의에 2시간씩 했고요. 거기에도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부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들이 강의하고 그분들은 또 시간당 강사료 따로 받아 가지고 가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 ○한정애 위원 말 나온 김에, 한기대 학생들이 저희 의원실로 자꾸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요. 1992년 개교 이래 6명의 역대 총장이 있었는데 노동부 관료 출신이 4명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과학기술부차관 출신이니까 순수 전문가는 초대 총장 딱 한 분이었습니다. 제발 관료 출신 말고 총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총장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노동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회 임원 6명 전원이 노동부 관료 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한기대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1000만 원씩 출연까지 하실 정도니까. 장학금으로 내실 정도이기 때문에 애정이 많으신 분인 만큼 한기대가 제대로 정상화되고학생들이 관료가 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한 총장선출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는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이사회 전에 총 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제가 될 때만 해 도,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추천위원회가 아 홉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여섯 분이 학교 의 교협회장을 비롯해서 학교 내외의……
- ○한정애 위원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의 여섯 분이 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추천위원회의 여섯 분이 전부 내외 교수님들이고 또 거기서 굉

장히 많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제가 만약 에 임명이 된다라면 최고의 전문가가 역할을 하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사회의 구성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본인께서 답변하실 때 박사학위 받 으신 것 하셨는데요, 후보자가 박사학위 하기 위 해서 중앙대학교—모교지요—대학원에 재학 중이 던 시절이 청와대 근무 2년 할 때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맞습니다.
-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한정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부 노정국 장 하셨는데 박사학위 취득을 하시려면 주당 9시 간의 주간 수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전부 야간에 수 업을 했습니다.
- ○한정애 위원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중앙대학교 대학원은 야간 수업이 없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희들은 전부 야간 수업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인 이어 가지고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는데 저는 죄 송하지만 첫 번째 수업 하는 8시 정도, 8시 반 도착이기 때문에……
-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 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자가 광주청장으로 재 직 중이던 2006년 3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광주 소재 호남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한 바 있습니 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겸직허가 받으셨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겸직허가 받았습니다.
- **○한정애 위원** 2006년 6월 본부 감사관 발령 났 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3월부터 했는 데 3개월 이후에 본부 감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 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한정애 위원** 감사관으로 발령났음에도 겸임교 수로 주당 두 과목, 수업 시간은 6시간입니다. 강 의를 지속했다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은 아니지 요. 물론……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두 과목이 아니 고 한 번 하는데 두 과목이 시차별로 아마 편성 됐던 것 같습니다.
- ○한정애 위원 이것은 저희가 호남대학교로부터 받은 겁니다. 노동정책 세미나 대학원에서 3시간. 복지행정대학원에서 3시간 해서……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두 학생들을 한 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한정애 위원 광주라고 하는 곳이 본부에서 왔 다갔다 하기가 그렇게 가까이 곳이 아니지 않습 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 ○한정애 위원 그래서 2006년에 하는 것은 일단 허가를 받은 거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2007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 었지 않았나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말로 바꿔서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 ○한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겁니다.

공직사회 관행 중의 하나가 공직사회 공무원으 로 근무하면서 박사학위 따고 석사학위 따고 하 면서 또는 강의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것 다 겸 직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습니다. 상사로부터.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1분 주세요.
- ○한정애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을 내면서 공무원들 급여 다 주고 그 사람들 학 위 따고 또는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강의 나가고 하는, 그래서 강의료까지 다 챙기도 록 하는 것 그것 하라고 급여 주고 하는 것 또는 세금 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앞으로 깊은 성 찰을 통해서……
- ○**한정애 위원** 깊은 성찰이 아니라 지금 관피아 척결 얘기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 교육훈련 또는 본인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나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도를 활용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 줄이고 나가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학위 따시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만 이렇게 특혜를 받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 ○한정애 위원 아니, 이 제도를 그래서 지난번에 법적 제도 바꿀 때 논의했습니다만 이 부분만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런 특혜를 받아 가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 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깊이 고민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위원 이게 무슨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계속 그 특권을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그것 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입 니다.
- ○한정애 위원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를 바꾸자 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부 관할 소관이 맞아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공무원은 저희 법이 아니라서……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함께 고민하도 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봉홍 위원 차관님, 모두말씀에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 질을 높이고 사회적 대화로써 신고용 노동질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재 노동부에 있는 전국 직원들 중에 제일 고참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노동부에서만 평생을 해 오신 분 인데 모범적인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근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기회가 되면 가슴에 새기고 담겠습니다.
- ○최봉홍 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 노조 판정 항고했습니까, 그때?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못 갔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교원노조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노조 측에서 항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봉홍 위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시정명령을 한 것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그 시정명령이 옳은지 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그 시정명령은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노위 판정은 위원장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공익위원 세 분하고 노동계 그다음에 경영계 두 분이 같이 합니다.
- ○최봉홍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 수가 전국에 한 1800만 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1800만.
- ○최봉홍 위원 조직 노동자가 130만이고, 지금 노동부는 노동법 제정 이후에 해 왔습니다만, 조 직형 노동자를 중심으로서 해 왔는데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의무도 소홀히 되고 현재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문제가 법이 되어 있 어도 혜택을 못 보는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최봉홍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실 겁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종사자 또 우리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험이랄지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촘촘히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봉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까 모두말씀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판 례나 노동부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예규나 행 정지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면으로 봐서는 90년대 이전의 노동부 예규보다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 더 기업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 옛날에 노동청 예규 시 대 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당연히 적용됐습 니다. 지노위 판정에 올라가 보면 법률적인 해석 보다 노사가 누가 더 공익적이냐 사회적이냐 거 기에 따라서 판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원이 변호사에 의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판정을 함 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도 못 믿고 기 다려 보고 있는, 지난 통상임금 판결 같은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노동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으 로써 노사를 규제를 해 온 것이 현황입니다. 그 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ILO 규정을 들고 나오 고 비준 권고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ILO 비준 권고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7%고 일본이 20%입니다.

그러나 ILO 회의에 가 보면 항시 와 가지고 떠드는 것은, 자국민을 자국을 욕하는 것은 대표 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ILO는 노사정기구인 데 ILO의 정책이나 권고 비준에 대해 가지고 정 부가 비준을 해 주시든지, 교원노조 같은 저런 사항들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후보자로 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ILO 비준에 대해서 말 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개, 약 14% 정도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LO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결사의 자유와 강제근로 자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의 역사적인 것, 사회적 현실 이 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착취 문제도 하도급이니 특수 고용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근로자들이 자 기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은 IMF 이후에 용역 업의 발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전부 중간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찰, 재입찰, 최저입찰 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장 근본 적인 문제가 노사 간에 자율화가 되려면 모든 협 정이나 협약이나 근로조건이 노사 간 합의로 용 인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 법 자체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 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로 형태 나 직종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는 산업사회 전반을 검토를 해 가지고 노동계에 서도 많은 학자들도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노동부로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하반 기 국회 때…… 국회 들어올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시를 한 다면 노동부로서 우리나라 노사 간 노동법 전체 를 재정비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든다든가 연구 회를 만든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거기에 동참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전반적인 노동의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굉 장히 크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라면 이 문제는……

○최봉홍 위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큰 틀에서 보면 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민할 사항이라고 봅니 다

○**최봉홍 위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 우 리나라 노동계의 노동법학회 교수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뵙고 현재까지도 이 분야를 추진을 하 고 있는데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되 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관님 되시고 난 뒤에 적극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원노조 문제요, 장관님 되시고 난 뒤에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설득과 이해 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교원노조 문제가 처음 생 겼을 때 교원노조 위원장한테 그랬습니다. '불법 도 악법도 법이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해라' 했 습니다만 결국 정치투쟁 노선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달 후면 9 대 6만이 아니고 70 대 6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기 전에 노동 부가 근로감독관이나 현지에 청장들을 보내 가지 고 설득을 해서 그 자체에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

켜 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근로감독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로감독 업무 나가서 기업에 물어보면…… 후보자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업무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계시는지, 뭐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으면좀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서 많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이렇게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랄지 최저임금이랄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획수사도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노사와 함께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하여튼 취임하시고 난 연후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성남이나 봉천동에 우리 한 국 청년들이 나가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 없는 지 아십니까?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나 외국인은, 몽골리안 같은 데는 저희끼리 팀을 짜서 가는데 한국인은 가 봐야 바깥에 나와 가지 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부와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그 문제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서도 각 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후보님, 아까 직무 관련 주식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님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공직 때안 하셨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 주식, 이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답에 대해서 제가 좀 걸려서 그러는데요, 이 '크레듀'라는 주식은 직업 훈련 관련한 주식이고 이 주식을 매입하셨을 때가 공직에 계실 때였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제 집사람 이······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있을 때 집사람이 한 200주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리고 사모님 얘기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모르셨을 리도 없는 문제이고, 사모님 문제까지 끌어들일 문제는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이 사실은 정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직무 관련한 주식이고 공직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가 본인이 경미하건 중하건 이건 적정하지 않은 처신이셨기 때문에 그냥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시고이렇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공직 때 없었다, 직무 관련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아까 제가 주로 퇴직하고 했다는 말씀이었고요. 공직 때 있었습니다. 공직 때······

○이인영 위원 퇴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11년 3월이면 노사정위원장 하실 때고, 2011년 3월 이전에 주식의 매입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더군다나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실 때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2011년 6월부터는 고용 노동부 차관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제가 공직 때······

○이인영 위원 정정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소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업무 연관성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입각한 연관성

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 ○**이인영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변명 하지 마시 고요. 딱 정정하시고 사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떻든 제가 공 직에 있었고 또 공직을 퇴직한 이후에도 크게 보 면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주 식을 꾸준히 매입하고 한 것이 비록 합법적이기 는 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반성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토대로 철저히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선 여 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관리 장 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노동경제 장관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획재 정부의 막냇동생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남편일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노동국에서 출발해서 노동청으로 발전해서 노동부까지 와서 오늘날 고용노동부장관으로까지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시고 또 한 편에서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위원님 말 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인영 위원** 오늘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성장이 일자리 로 연결되는 부분 그 고리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그것은 기획재정부의 논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노 동의 가치가 절하되고 심지어는 노동의 가치가 파괴된 것에 있다'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가 치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존중될 수 있도 록 일하는 것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하셔 야 할 핵심적인 가치와 과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마음에 새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런 점에서 놓고 볼 때 고용노 동부장관님의 눈으로는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경제에, 분배 구조에 위기가 온 것, 기업과 노동 이 부분들의 균형이 파괴된 그리고 그것의 위험 성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지적할 수 있으셔야 한다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 빈곤의 문제들, 저 임금 구조와 비정규직 구조 이것의 끊임없는 악 순화의 고리들 이 문제들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노동3권이 계속 발전해 왔듯이 성역 없는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서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꾸준히 노력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첫 번째 문제로요,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5.4% 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연평균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같은 기간 5 인 이상 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고작 0.6% 증가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방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국민총소득은 5.6% 증가했는데 그 내용 을 살펴보니까 기업소득은 8.7%가 증가했고 가 계소득은 4.8%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2012년도 통합 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홍종학 의원님의 자 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를 포함한 1926만 명의 중위소득이 월 154만 원에 불과합니 다. 일을 하는 우리 국민 중 최소한 963만 명은 월 154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2012년도 월 최저임금 94만 7000원도 못 받는 그런 서민은 전체 소득자의 3분의 1이 넘는 643 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 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통합소득 상위 10만 명의 연평균 소득은 4억 5559만 원이고요, 최저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노무관리만 잘하면, 고용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뒤에 지적하겠습니다만 고용정책만, 그냥 끊임없이 일자리를 잘 만들겠다,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의 수많은 과제들이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떤어떤 노동정책, 노무관리 정책을 펴겠다'이런 것 이전에 기본적 으로 기업과 노동의 분배 구조가 무너져 있는, 그 균형이 파괴되어 있는 이 현실을 개선하지 않 으면 매우 한계적인 고용노동 정책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분배 구조의 위기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도급 관계가 굉장히 많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청의성과가 3차・4차 벤더로 흘러가서 그쪽 3차・4차 벤더에 있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거기에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일하게 하는 것이 일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있고요.

○이인영 위원 그것보다 한 차원 높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기업에게 이윤, 과실이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1000조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액수, 우리나라의 GDP 생산 규모와거의 맞먹는 이런 액수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로 빈곤의 악순환 구조, 최저임금 구조를 끊기 위해서 기업을 향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라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야 소비·구매가 촉진되고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어서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어야 한다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쨌든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 부분의 분배소득 부분이랄지 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랄지 또 EITC의확대랄지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〇이인영 위원 그런 말씀은 뒤에 별도의 고용정책이나 노동정책에서 제가 또 여쭤 볼 거고요, 부적합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자고도말씀드릴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편향된 경제 정책이 우리 사회를 계속 주도하게 해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기획재정 부장관 못지않게 노동경제부장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등하게 분배 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임금 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문제라든가 기업의 사내유 보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라든가 등등을 위 해서 투자,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라 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기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 노동의 어떤 정당 한 보상 또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계 속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이인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그 자리에 계신 것에 대해 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기대 총장님이셨 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런데 과거의 한기대 총장을 보니까 1대·2대·3대는 적절하게 공학박사 또 과학기술처 차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한기대의 총장님으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고용노동부에서 계셨던 분들이 그쪽 한기대총장으로 4대·5대·6대까지 계속해서 부임이 된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앞으로 제가 기

회가 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선임하 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되도록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는…… 과거의 관행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지 나온 일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짚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나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관피아', '노피 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 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공감합니다.
- ○**문대성 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은 한 2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더라고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문대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수장이 된다면 고 용노동부의 문제점, 현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들이 글 을 통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일자리 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통상적인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 각이 듭니다. 특고 부분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일자 리이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 한 부분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 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간병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들은 민간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일자리를 얻는 데 서비 스료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내고 있어서 그 런 부분을 보강을

○문대성 위원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무언가 이렇게 핵심적이고 정말 이 노동에, 우 리 국민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의 지 금 이 자리가 그 어떤 상임위보다, 그 어떤 부처 의 장관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 다.

모두발언에서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

축 등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하 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언 급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특별 한 이유는 없고요. 최저임금도 여러 가지로 말씀 을 드렸지만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계층에 있 는 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물가상승률이 나 경제성장률을 넘어서 분배 개선의 부분이 반 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지속 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성 위원**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최저임금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된다, OECD에 가입한 26개 회원국 중 에서 17위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처도 보면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반면에 최저임금 관련해 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5580원이라는 이 최저임금이 장관후보자 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분배 개선이 될 수 있는 율로 이렇게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최저임금위원 회 명단을 좀 보고 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 용자위원을 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근로자위원은 주로 노동단체에서, 또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분으 로 아홉 분이 구성이 되고요, 사용자위원은……
- ○**문대성 위원** 공익위원은 학계에서, 다 사용자 위원은 사 측에서……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의 재산현황을 다 공 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병상 련이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제가 마음이 아프면, 또 내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면 그 겪은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처 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여기 계신 분 들은,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귀

족노조에 들어가시는 것 같고, 또 공익위원 같은 경우는 사 측에 많이 인벌브(involve)가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OECD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봤다는 얘기지요, 2015년 최저임금 관련 해서.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15년 최저임금 마지막 결의를 할 때 사용자위원은 퇴장하고 공 익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이 찬성을 해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4인 기준의 최저생계비가 16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 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16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또 그 외에 시간제 일자리 이 부분이 다 이게 어떤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OECD에 맞게끔만 정해진다면 통상임금도 올라갈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이전체적으로 다 상승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이 돼 있지도 않고요.

또 과거에 보니까 지난 5년간 3.1%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7.1% 정도, 그것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지난 5년, 과거 5년이 좀 불합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OECD 기준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난 5년은 평균 잡아서 약 5.5%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어떤 역할을 넣어서 7.2%, 7.1% 이렇게 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장 열악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된다는 큰 대명제도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영향을 주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커서 영향률이 과거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는 4% 이랬는데 최저임금 영향률이 14%까지 올라가서 그게 혹시 고

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같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내년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을까, OECD 기준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두발언에서 보면 노력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만 했지 뭐 하나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 OECD 기준에 맞추겠다라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최저임금이 확 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요.

○문대성 위원 장관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몇 몇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요, 최저임금 못 맞출 이유가 없다, 공익위원, 근로자, 사 측…… 지금 전체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분들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떻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저는 취지가 아니고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 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책임져야지요. 이것이 외교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 측 만나서 충분히 이해만 시키면 충분 히 가능한데,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5년간의······

○**문대성 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3.1~3.2%씩밖에 지금 안 됐다. 그러면 소급하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런 취지가 아 니고요.

○문대성 위원 소급하시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5년간에 걸쳐서 소득분배 개선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 다는 것이 국정과제이고 또 장관으로서는 그 국 정과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대성 위원** OECD 관련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이 부 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문대성 위원 하나는 책임져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것 다 노력하겠다고 말만 하시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직 후보자 신 분이라 제가 노력하겠다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 다.

○위원장 김영주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문대성 위원님께서 최저임 금에 대해서 계속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하셨 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우 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하시는데 꼭 사용자 대표가 앉아 계시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 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향후 5년간 소득분배에 대해서 노력하겠 다' 이것은 일반 지나가는 사람도 다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 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준 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장관으로 내정된 부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모두발언을 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직 무가 참으로 어렵다, 지난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우선 박근혜정부 들어서 고용률 70% 달성 이 렇게 공약을 걸었고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 획을 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경제성장을 시키면 성장한 만 큼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과거에는 1% 경제성장을 하면 14만 개인가요. 21만 개인가요? 일자리가 늘었는 데 현재는 아마 제 기억에 7만 개 정도밖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고용탄성치 가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권성동 위원 안 늘다 보니까 사회양극화, 빈 부격차가 심화되고, 정부에서 지금 모든 정책수 단을 다 동원하는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 선 들고요.

첫 번째 질문은 장관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에 서 죽 성장해 오신 분이고 또 핵심 요직을 다 거 쳤고 또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전반 적으로 경제 전반을, 국가 전반을 조망할 수 있 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했는데 노동부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을 때는 조직 논리밖에 안 보입 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또 조 직원의 이익을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검사 시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검 찰청의 잘못된 점 얘기하거나 검사 잘못된 점 얘 기하면 잘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 와 보니까 그 조직의 문제점, 폐단이 잘 보여요.

바깥에서 한 1년 반, 2년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밖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본인 이 평생 몸담아 왔던 노동부를 다시 한 번 들여 다보고 조망할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밖에서 본 노동부 뭐가 문제고, 그것이 조직운 영이든 아니면 노동부 직원들의 행태든 뭐를 가 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노동부가 국민으로부터 사 랑을 받고 또 노동자나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받 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너무 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느낀 것 한두 가지만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존에 근로자 일자리 개념에서 너무 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밖에 나와 오니까 말 그대로 고용부가 고용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계층에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400만의 일자리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용부가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해 왔는데 가장 단기간에 일하는 분들, 간병인·건설일용공 이런 분들은 다 민간 취업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 고 또 본인이 거기에 수수료를 내고 하는 형태였습니다. 또 특고 부분도 우리가 전속성을 가지고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가장 절실한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를 보고 접 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 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임금·정년 60세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까지 겪어 왔던, 이제까지 행정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고 판결이 어떠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쳐다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15년 후에 이런 제도들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또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관점을 미래 지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조직운영과 관련돼서 공무원 행태와 관련돼서는 고칠 점이 없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용부 공무원들이 타 부처에 비해서는 고통을 많이 받고 해서 타 부처로 가겠다는 전직 비중이 대한민국 전체 중앙부처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2등하고는 한 10배 차이가 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더 국민 입장에서, 더 근로자 입장에서 더 경청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의 실적 중에 아마 최대 실적으로 꼽는 것이 정년 60세 연장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결국은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경제성장으로 이끌고 또 그 경제성장의 과실이 청년들의 고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그럴 듯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대기 업이나 공공 부문도 마찬가지고—고용이 갑자기 연장되다 보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일감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령자한테 일자리를 줌으로써 청년 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이게 단기적 으로 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현실에서 그럴 겁 니다. 그래서 기업 하는 분들 많이 만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시행 시기는 다가오고 임금체계 개편은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청년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수 있을 것이냐,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면 또 다른 사회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께서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글도 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법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보장해 놨지만 임금체계가 개편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이 우선 줄어들 것이라는, '내가성실하게 일을 하면 60세까지 정년을 마치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근로자 입장에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도 임금체계가 반드시 고쳐져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연공서열급, 매년 연공급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초임하고 이렇게 정년퇴직할 때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공급으로 하고 있는 일본이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영미국가에 비해서는 더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서 그런 부분을, 전체 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과만큼, 노력만큼 올라가는 전제하에 그 임금체계를 연공 부분을 좀 줄여서 직무와 성과에 맞게끔 해 주어야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정년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직접 채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은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 니고 노사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정년도 보장되고 근로자들이 내가 정년 할 때까지 현재 의 자리에서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할 수 있 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 고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권성동 위원 우리가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정부 시절에 노사정위원회제도라는 게 처 음으로 생겼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특히 고용·노동 문제는 노사정 이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 이 현실인데, 초창기에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일으켜냈다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사정위원회 가 형해화된 것이 아니냐,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만 과연 그 역할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이런 노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 고 또 거기에서 합의 · 양보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지, 아 니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를 창안해 낼 수 없는 지,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노사정위원회는 저는 특히 근로자, 노동계층에서 제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98년도 대합의를 한 이 후에도 주5일근무제 등등의 우리의 새로운 제도 변화를 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고, 최근 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 차원의 노사정위원회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 또 고용・노동 정책뿐만 이 아니고 연관된 산업정책 등을 논의할 수 있도 록 그 논의구조도 좀 변화하고 의제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지역 간, 업종 간에도 노사정 간 에 머리를 맞대는 시스템으로 고쳐서 격차 문제 를 해소하는 그런 노력의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 각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심을 다 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 쳤습니다만 본인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앞서 장하나 위원 질의에 중앙일보 칼럼에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벤처기업 등의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 채용을 늘리겠다'이 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고용률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금 50.3% 정 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여 성 50.3%면 남성보다 여성이 높습니다. 고용 70% 올리는 것은 남녀 다 같이 올려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위원장 김영주 그러시다면 여성 근로자 중에, 50.3% 중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얼마인 지 알고 계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전체적으로 시 간제 근로자 비율이 9.8%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은 제가……
- ○**위원장 김영주** 잘못 아십니다. 여성 임금 근 로자 중에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통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73%나 됩니다. 여성 임금 노 동자의 비정규직이 시간제(파트타임) 다 합하면 73%가 되거든요. 이것 정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성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파 트타임, 기간제라도 늘려서 일자리를 하신다는 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여성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일자리 중에 시간제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 특히 그런 여성 노동자 시간제를 줄여야 되고요. 여성 고용환경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일자리를 늘리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이나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일단 입직을 하고 나서 여성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하다가 가장 어려움을 맞는 게 육아기, 출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육아휴직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은 나름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제도적으로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연관했던 부분은 현재 경력단절여성 200만 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급적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는 현재의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고용구조에 서 여성의 어떤 일자리를 다른 나라처럼 완벽하 게 하려면 이분들이 육아나 출산 직후에 그 뒤로 경력단절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 서 소위 육아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주 후보자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지금 잠깐 핀트가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서면으 로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 여성을 남성하고 임금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하자고 지금 당장 에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70%가 넘는 여성고용 시장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벤처의 시간제를 여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바뀌 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거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참고인 신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비정규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여야 각각 30분씩 총 1시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야별로 질의자 수 및 질의시간은 자율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신문하는 동안 후보자는 신문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곳에서 대기하였다가 신문이 끝난 후에 다시 참석시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는 류하경 변호사, 변윤석 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합 대표, 박지순 고 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 규노동센터 소장 이상 4명이 출석하였으며 자세 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미리 신원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이 호명하면 참 고인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하경 참고인.

변윤석 참고인.

박지순 참고인.

이남신 참고인.

(참고인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참고인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들께서는 상호간에 토론하실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수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은수미입니다.

제가 오늘 참고인분들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이기권 장관후보자가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서 경 력관리를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지노위 위원장으로 재직 시 전교조의 규약에 대해서 위반이다라는 판정을 내린, 그래서 오늘날의 전교조 사태를 처 음 시작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더불어 2009년 근로기준국장으로 재직 시 '비 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비정규 입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시도를 했던 또한 주무 담당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여러 참고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특히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래서 참석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류하경 참고인께 전교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노조법 제2조 문제인데요.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전문가들 사 이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던데 맞습니까?

○**참고인 류하경** 예, 논란이 있기는 있으나 법 상식에 따를 때는 위헌이고 위법이고 무효라고 생각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한 박지순 참고 인께서도 지난 2014년 6월 21일 한국일보와의 인 터뷰에서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의문이다'이 런 인터뷰를 하셨던데 사실이지요?

○**참고인 박지순** 기사가 조금 중간에 거두절미 하고 나와서 전체적인 논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 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박지순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법 자체 가 위헌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기사에, 분명히 인터뷰에 응했고요. 다만 앞 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 우리가 좀 풀어 나가야 될 숙제는 안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은수미 위원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 서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행정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 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1991년 헌법재판소 결 정으로부터 유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들이 알건대 적어도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서 사실은 그러한 기존의 법과 다른 어떤 법안 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내지 금지 부분은 사실은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 교원의 노동3권이 전부 부정될 시 판례라고 보여지고, 특히 1996년 이후 OECD에 가입을 하고 1998년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ILO나 여러 국제 기구에서 한국에 현행법의 개정 내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했던 그간의 경과를 보면 1991년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법외노조가 아니 다'라고 판단한 이러한 내용은 사실 좀 뒤떨어진 판례를 인용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가 싶은데 류하경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참고인 류하경** 그러니까 99년도에 전교조가 설립된 것이, '전교조가 합법이다, 합법노조다. 법 내노조다'라고 인정되기 이전의 그런 판례들은 이런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는 모두 효력이 없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교원들은 노동3권을 가 지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전의 해석과 판례들 은 다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9년 이후에는 교사들, 전교조에 가입된 교원들 도 당연히 노동3권을 가지는 노동자들이다라고 해석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은수미 위원 결국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전, 그리고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의 판례, 그것도 교원의 노동3권이 전부 부정되었던 판례를 인용해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선 보여 줬다라고 보 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 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파일을 좀 보여 주시면, 원래 노조 행정

관청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라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우선 1987년 노조해산명령권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합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정권이 슬쩍 헌법 7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88년 4월 국무회의를 소집 해서 아무런 법규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제9조2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시행령을 슬쩍 넣어 놓는데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우선 헌법 제75조를 보시면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9조2항은 사실은 아무런 위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모법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행정청이, 행정부가 일체의 권한, 노조 해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즉 유신 잔재일 뿐만 아니라 헌법 75조를 위반 했고, 더군다나 입법권을 침해해서 행정부가 노 동3권을 부정해 버리는 그러한 헌정질서 문란에 거의 근접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류하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류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75조에도 어긋나는 구체적인 위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헌법 37조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법률은 대한 민국 법률에 없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33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 동3권 중에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 이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인 단결권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침해했 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이고 마찬가지로 무효입 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아까 PPT 자료에서, 88년 당시에는 8조2항이 맞습니다. 지금은 9조2항으로 변경됐음을 양지를 해 드리고요.

박지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 혹은 류하경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지순 저는 은 위원님처럼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에게 만약에 질문의 방향이 우리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 대한? 그 결격사유가 타당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사실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만약에 해석론상, 형식논리적인 해석론상 결격사유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질문방향이 그쪽으로 모여진다면, 이것은형식논리입니다.

우리 노조법 2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기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이 우리 노조법에서 보면 설립심사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있지요. 그것은 설립심사단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그 판단을 그러면 후속, 설립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실체적으로 우리 노조법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노조 아니므로 통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형식논리적으로 문제인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법 2조에서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 결격사유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실체적 판단규정이지, 설립심사단계에서만 그 존부가 심사되어지는 그런 한정적 요건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형식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은수미 위원** 형식논리적인 이야기라도……

○**참고인 박지순** 법률적인 판단이지요.

○은수미 위원 그렇지요, 법률적이고 각종 법률 규범에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따 른 피해가 지금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지 저는 법 형식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정의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거나 했어야 될 문제를,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류하경 변호사님께 여쭙는 건 그걸 장관후보자께서 서울지노위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규약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해서 유발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장관으로 실제로 지명이 되 어 버린다면 이것은 '전교조 죽이기의 마지막 끝 맺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능하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극히 의심스럽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 니까?

○**참고인 류하경**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 행정관청 중에서 노동부라고 하는 곳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기본 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누구보다 앞서야 되는 부서이고 그런 부처의 수장이 노동부장관이 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15년 전에 설립되어서 아주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전국교원노조 에 대해서 단지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이렇게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계속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이것은 노동부장관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닐뿐더러 나아 가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하고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심 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 및 간 접고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남신 소장님께 좀 질 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저의 설명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시 장관후보자가 근로기준국장으로서, 담당자로서 행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어 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후 비정규직 규모가 소폭 감소합니다. 아주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비정규직 입법, 보통 법 평가 는 2년 정도를 보고 평가를 해 보면요, 시행 2년 이 지난 2009년까지 정규직 전환 효과가 매우 뚜 렷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은 45.8%, 2008 년에서 9년까지 그다음에 평균이 26.7%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전체의 정규직 전환율을 본 것 이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떨어져요, 금융 위기도 지 났는데. 갑자기 떨어진 이유를 당시의 전문가들 은 주무관인, 당시 주무담당자였던 근로기준국장 및 이영희 장관이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여 기업이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것을 기간제만을 가지고도 받습니다.

이게 2011년 연구결과입니다. 기간제 정규직 전환율도 27.2%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집 니다. 그러니까 2년간 효과가 있다가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법의 원래의 허점이 뭐였느 냐 하면 파견이나 용역을 규율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부터 파견용역으로 가거나 파 견용역에서 기간제로 가는 추이는 다 굉장히 높 아지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당시 장관후보자는 '파견을 더 확대하겠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연장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간제법 때문에 100만 해고 대란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남신 소장에 대해서는 비정규 입법에 대해서 당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으셨다 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우선 간접고용의 사각지대는 법에도 여전히 허 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장관후보자라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일정하게, 부족한 법이라도 입 법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장관후보자가 나서서 있지도 않았던 100 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장 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정책수행 능력에 있어서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 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남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 년 100만 해고 대란설은 일단 비정규보호법으로 통칭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갖든 간에 사실관계 자체가 대단히 왜곡된 것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장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지금 후보자께서도

책임을 아마 통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안 그래 도 고용 불안정에 처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 자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켰고요, 그리고 노동계와도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보호법에 대해서는 애초부 터 한계를 가진 법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입법 취지에서 고용안 정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근속 시에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정규직화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한국의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다만 당시의 노 동조합의 취약한 조직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호 한 태도 때문에 이 입법 취지가 잘 시행되지 않 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 지만 이렇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또 근로기준국장이 직접 주도해서 100만 해고 대 란설을 퍼트린 것은 아주 악의적인, 저는 마타도 어(matado)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검증과 입장 확인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비정규보호법 관 련해서, 그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 은 간접고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풍선효과로 불리는, 예를 들어서 2년 이상이 되기 전의 초단기계약으로 할 뿐만 아니 라 파견이나 용역 같은 비정규직 고용 행태 중에 서 더 나쁜 일자리로 전환하는 이 문제, 이걸 막 지 않으면 오히려 입법 취지가 왜곡되는, 이걸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들을 포함해서 노동계에 서는 '간접고용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이 병용된다면 기간제 방 식의 정규직화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고용노동부와 경영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고 우선순 위를 두지 않은 채로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 환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늘 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비정규직 에서 가장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공정 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우친, 특히 경영자에 치우친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여 러 가지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했 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간접 고용 사업장에서도 엄청난 부당노동 행위가 일어 났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보여지 듯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노동자까지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해 서 현대자동차, LG, SK 전체에 걸쳐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남용되고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감사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셔서요.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쭈어 보겠습 니다.

변윤석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변윤석 참고인께서는 과거에 한 토론회에서 전 교조는 법인격을 잃었으므로 단체교섭권이 없다, 교섭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인 변윤석**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 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법원 97년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무조건 단체 교섭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즉 법외노조이든 합법상의 노조이든 단체교섭권 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4년 판결에도 '법외노조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 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하여 헌법상의 노동3권의 권 리를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변윤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이, 그것 이 단체교섭권이든 무엇이든 인정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우리 변윤석 변호사님, 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 합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는 단체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변윤석** 주로 전교조가 보여 주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의 어떤 시정 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육 현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에 대해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 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판결의 의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참고인 변윤석** 기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어쩔 수 없는 판결이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 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교조가 주장 했던 청구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해야 할 입법, 법률 개정을 법원에다 대고 해 달라고 하 는 요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일단 해직자는 교원노조에 가입 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을 아주 명확히 한 것이지 요. 그것도 뭐 원래 또 우리 법상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조 측에서는 해직자의 교원노 조 가입을 제한하는 그런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 헌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변윤석**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헌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부터 교원 법정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에 터 잡아 가지고 교원에 대해 서 일정한……

○**권성동 위원** 교원지위 법정주의라는 말을 뭐

법조인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또 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풀어 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변윤석** 교원의 신분상 지위 그다음에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별도로 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전교조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을 배척을 한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 면 교원이나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참고인 변윤석**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중립성이라든가 공공성이 더 크 다?

○**참고인 변윤석**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근 로자, 노동자와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헌법에서부터 법률에 의해서 좀 제약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왔고 그에 따라서 만들 어진 교원노조법에서도 역시 그런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참고인 변윤석 예.

○권성동 위원 또 그동안 전교조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 조항 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 든요. 그에 반해서 법원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 는데, 그에 대한 변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예.

○**참고인 변윤석** 지금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9조2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9조2항이 위헌이다' 이렇 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약에 전교조의 말처럼 시행령 9조2항이 무효다라고 한 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 보게 됩 니다.

시행령 9조2항이 무효가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노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노조 설립단계에서의 사전 심사하는 그 조항—우리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가지고—그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원만을 노조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주장대로 시행령 9조2항을 무효화시켜 버리면 역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노조법은 거의 유명무실해져요.

왜냐하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행령 9조2항에 따른 것은 무효다' 그리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계속 벌금만 내면 된다'계속 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전교조의 주장대로 간다면 웬만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설립단계에는 아주멀쩡한 규약,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으로 신고를받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증을 받은 그다음 날 바로 또 규약을 바꾼다든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될수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전교조의 주장이라면 정부에서는 벌금밖에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벌금 500만 원입니다. 지금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어겨 가지고, 이행하지않아 가지고 받은 게 벌금이 200만 원이에요.

과연 우리가 노조법에서 가지고 있는 노조 설립단계에서의 사전심사제도 또는 교원노조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입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하게 하는 그 제도가 500만 원이하의 벌금 그것으로 과연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전교조의 주장은노동조합법의 사전 설립단계에서의 심사제도 그다음에 교원노조법상의 규정 그런 것을 완전히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위헌이라고 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법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교원이 아닌 자를 근로자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살펴보면, 거의 다 살펴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무엇무엇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보통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얘기는 이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그런 불이익 또는 효과가 이미 발

생했다, 따라서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노조의 권리를 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있는 9조2항은 이미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하기위해서 규정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 그런 논리를 취했지만 다른 논리도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행정행위에 있어서 취소와 철회에 관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청에게 어떠한 법률이 권 한을 주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행정행위를 할 당시 또는 그 후에 애초에 행정행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최초의 행정행위 단계로 소급해서 그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그 행정행위를 철 회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쉽게 얘기하면 사후적인 사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도 합헌성이인정될 수 있고,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서 문제는 시행령 9조2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성동 위원 예, 그렇지요.

○참고인 변윤석 시행령 9조2항은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한 조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어용 노조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용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또는 맨처음에는 멀쩡한 노조인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용 노조였다, 활동을 했다…… 그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어용 노조를 더 이상 법내노조로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 시행령 9조2항입니다.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서 해 주셨는데 충 분히 이해가 갔고요.

결국 이번에 전교조가 문제가 된 것은 첫째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허위 규약을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참고인 변윤석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것은 ○권성동 위원 법상 노조가 아니다'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또 한편 전교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및 위법한 규약에 대한 사실을 과거부 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불이익을 준 것이다', 그래서 소위 그러한 법상 하자가 치유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변윤석 그게 이제 실권의 법리라고 하 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 았으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법리인데, 그게 인정되려면 노동부의 상대방인 전교조에 대 해서 노동부가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이 노조로 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 유로 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것을 명시적으 로 밝혀야 하고 그 명시적으로 밝힌 것을 믿고 전교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래 가지고 아주 쉽게 차 버 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번에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이 9명인가 그렇지요?

○**참고인 변윤석**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9명이어서 전체 조합원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 극소수이고 그렇 기 때문에 이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또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고인 변윤석** 예, 맞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참고인 변윤석** 일반 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그 런 주장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최근 4월에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 법원의 판결 취지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교원도 공무원하고 거의 같이 보니까요, 교원 또는 공무 원의 경우에는 어떤 자주성이라는 요건에다 해당 법에서 현직 교원과 현직 공무원이라는 요건을 아예 플러스로 더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플 러스로 제시하고 있는 현직 교원, 현직 공무원이 라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사람 수가 몇 명 이든 관계없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은 상실된 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9명이면 되고, 그러면 90명 이면 안 되고…… 몇 명인지 그 기준을 할 방법 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 에서도 '9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꼭 처분하느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별 노조 라든가 지역별 노조 또 직종별 노조 같은 경우에 는 일시적인 해고자, 해직자 또 실업자, 구직자 이런 사람들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고 판시를 하 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교조도 산별 노조 내지 직종별 노조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리라 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참고인 변윤석** 우선 형식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조도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서 똑같이 해 줘야 될 거냐 그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교원과 공무원은 따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원노조법을 특별법으로 안 만 들고 그냥 노동조합법에 넣어 가지고, 입법 당시 에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넣었다면 아마 해결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도로 만들기로 했고, 별 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입법부에서의 입법적 결단 에 의해서 일반 노동조합법과는 다르게 본다, 그 다음에 법률규정 형식이 교원과 공무원노조의 경 우에는 아예 현직으로만 못을 박고 있어요. 그렇 기 때문에 그 논리가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지요.

○**권성동 위원** 교원노조법 제2조에 현직 교원,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다투는 자는 중 노위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 했잖아요?

○참고인 변윤석 예.

○**권성동 위원** 그러면 현행법 해석상 해직자 같 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석한다고 그래도 조합원 자격이 없게 되는 경우지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 니까, 그 이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 니까?

○**참고인 변윤석** 저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요?

그때 아마 여야 합의하에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규율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저도 법조인이지만—현행법상 해석은 지금 서울행정법 원 판결처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달리 해석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는 수밖 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참고인 변윤석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시행령 9조2항이 아니고 요, 교원노조법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론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 지요?

○참고인 변윤석 예.

○권성동 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 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 입니다.

지금 전교조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참고인으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비정규직 관련 답변을해 주시러 오신 건 알지만 그래도 평소에 전교조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매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과 방금 답변해 주신 변윤석 변호사님 답변도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 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나아가서 교원노조법 2조를 포함한 법의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첫째는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사태가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개정의 필요성 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문제가이미 발생했고 엄청난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노위 위원으로서상당히 책임감과 해법을 너무 갈구하고 있고, 아마 오늘 청문회에 나온 이기권 후보자도 이 문제

가 정말 중요한 몇 개의 주제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아까 입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약간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교원노조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도 말씀을 해 줬으면 좋 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들어간 것 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헌은 아닐 것으 로 보인다는 변윤석 변호사님 말씀도 있으셨고

거기까지 두루두루 입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감 사하겠습니다.

○참고인 박지순 하여튼 전교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노동법 전문가들도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곤혹스러우면서도 소위현행법의 법치주의적인 문제와 앞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가 서로 혼용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문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보편적 가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무원과 교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또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 문제라든가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어느 한 방향으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않은데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로 서도 일단 이 문제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문제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 해 나갈 것이냐는 좀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 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법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명백히 그렇습니다. 법 문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법 문언을,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 의사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결격사유로 보지만 대법원이 산별 노조와 일반기업별 노조를 구별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론을취하고 있는 데 반해서 교원노조법 같은 경우는이것은 특정한 어떤 노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현행법 해석론상의어떤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전교조 문제라든가 전공노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단결권을 조금 더 보장해 나가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도 같이 앞으로 풀 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 다. 뭐냐 하면 외국의 경우도 사실 집단적 노사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만 정립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단결권 보장은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마는 독일 은 단체교섭이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 이나 이런 공공 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단결권은 좀 제한되어 있지만 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구조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아예 노동3권을 전면적으 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라마다 이런 공공 부문, 특 히 전교조나 전공노에 있어서의 입법론들을 다 달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현행법을, 우리 문 제를 풀어 나갈 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개선 해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바로 그 역할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결국 국민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주 예, 한 1분만 더 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 개정 방 향에 대해서는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은 없으신가 요? 그러니까 법 개정 방향은 국민 여론 수렴하 기 전에는 없으신가요?

○**참고인 박지순** 그것은 지금은……

○**장하나 위원** 그래도 참고인으로 나오셨고 전 문가로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저도 수렴 해 봐야 안다'는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소 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맞는 자리라고 보여집 니다.

○참고인 박지순 글쎄요, 그것은…… 이 자리가 사실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정책 토론을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 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장하나 위원 오히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 시는 게, 다른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소견 을 여쭤 보러 오신, 그러니까 저희도 모신 것이 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확대해석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교원노조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개정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다면 어떤 방향 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지순** 기본적으로 이번 문제에서 가 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전교조 문제는 단순히 근로 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라는 한 측면만 볼 거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교원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존경과 그다 음에 책임의 측면까지 같이 아울러 볼 거냐 사실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교사라는 지위가 갖 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선은 전교조가 현행법을 충실하게 준 수한다라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고 그 것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아마 우선시됐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은 개 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 어떻게 앞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 로 이렇게 고민했으면 훨씬 더 성숙되고 국민들 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요. 알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박지순 교수님께······

좀 쉬실 시간 드릴까요?

최근에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세 월호 사건 관련해서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 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 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원인도 많겠 지만 그중의 하나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 정했다라는 문제점도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도 관련이 깊겠지요.

그래서 지금 특정 일자리에 대해서는 특정한 고용 형태는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 제 제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합리성 과 비합리성을 떠나서 일단 이런 큰 참사가 일어 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 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인 박지순 우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의 어떤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어떤 무책임 그리고 무사안일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굉장히 비극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보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이렇 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어떤 고민이 있느냐하면 과연 고용 형태의 제한이 그런 어떤 안전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우선 하기는 해 봐야 되고, 만약 그런 고용 형태의 제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일부 수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의 현상만을 보고 있지만 예컨대 지 금 비행기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정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근로조건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 고용 형태로 만약에 강행적으로 제한할 경우에 과연 종사자들이 거기 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헌 법에서 어떤 자기결정의 자유라든가 기본권 침해 문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어떤 특별히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건을 엄격하게해서 그런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어떤 일정한 규제 내지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분야에서, 안전의 핵심 되는 분야,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참고인 박지순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 구체적 인 해외 사례를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경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망치라 는 도구를 가진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못으로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어떤 거기에 맞는 장치들, 수단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의 수단밖에 못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예컨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전제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안전전문기관의 어떤 권한이나 책임 그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고용 형태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이상의 어떤 수단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완해 주는 보조적 수단인지도 우리가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용 형태의 제한이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어떤 그런 가장 일차적인 수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같고요. 우선 정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수단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용 형태의제한도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것이 어떤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라든가 기본권의문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

인적인 생각입니다.

○민현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고용률 70%가 국정과 제로 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확대입니다. 그중에서 파견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 교수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중고령자 일자리 확대 중 심으로 된 일자리가 질이 너무 낮다라는 평가는 세간에 이미 다 널리 퍼져 있는,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고용률을 높이느냐, 양적인 확대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 표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법망을 벗어나 있는 것 이 아니냐, 그런데 또 반론에 따르면 이미 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 자리, 그 연령대 그 경력의 그 상황에서 원하는 일자리라는 반론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정부 추진 일자리의 수준을 낮추면서 이 중고령자층을 희생 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사실 만만 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조치, 행정적 조치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인 박지순** 주로 고령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사실 젊은 세대, 청년 일자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 면 젊은 세대, 청년이나 중장년들이 종사해야 할, 취업해야 할 일자리 외에 비어 있는 다른 일자리 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자들이 라도 일자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고용 률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게 만드는 것, 종합적인 하나의 사회복 지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나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일자리를 매 칭시킬 수 있는 보다 더 유효하고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고령자가 독자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간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것이 파견 형태가 됐든 다른 직업소개 형태가 됐

든 또는 노인실버센터가 됐든 다양한 수단을 통 해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곳이, 어느 정도 품질을 가진 파견 업체들이 책임을 지 고 그런 일자리를 근로자들에게, 고령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것이 파견이기 때 문에 나쁜 일자리다 내지는 다른 수단이기 때문 에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은 제가 볼 때는 객관 성을 조금 저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인 식에서 파견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거티브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 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 가 파견 일자리의 품질을 어떻게 제고해 나갈 것 인지,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파견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책임과 사회적 윤리의 식을 어떻게 고양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대비한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하 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이번 답변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드는 생각이 근로감 독을 철저히 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현 상황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점들이 해소되지 않 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근 로감독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참고인 박지순** 행정부 입장에서는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도 제기할 것 이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파견 업체들이나 이런 직업소개 업체들이 굉장히 소규모 업체로 난립되 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근로감독을 수행한 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 고 공정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노동시장을 지향 한다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개선방안 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 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쭉 보면요, 이것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활조사 부가조사 쭉 보면 32%, 33%를 쭉유지하고 나오는데요. 결국에 기간제법이 효과가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지순 제가 노동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그 통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상태가 과연우리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보여 주는 지표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분명히 비정규직은 지금보다도 더 줄어야 된다는 데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앞으로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치료법이 필요한데 그 치료법 중에서외과적 수술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아마 바람직한 해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따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포괄적이고 좀 더 다양한 수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고민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의 어떤 수치가 주는 것은 그것을 우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대로 고착화된다면 계속해서 이 30%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어쨌든 이 문제들을 좀 더 줄 여 나가기 위해서 기간제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비정규직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합리 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대책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상당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 등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참고인 박지순 저는 만능이지 못해서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순서로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남신 소장님, 제가 17대 국회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갈등이 극심했던 비정규직과 관련한 비정규직 보호 3법을 통과시켰는데 18대 국회에 떨어지고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100만 해고설, 대량 해고설 이게 나오고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마침오늘 후보자로 된 이기권 후보자가 당시 주무국장으로서 이 일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00만 해고 대란설'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참고인 이남신 일단은 팩트 자체가 대단히 가 공된 것에 가까워서 사실 실제로는 거의 거짓말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실제로 그때 70% 이상이 해고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역이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선효과를 포함해서 실제로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중앙정부가실제로 입법 취지를 관철시킬 정도의 그런 정책의지가 있다면 기간제법 자체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객관적인 노사정의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일자리로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 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는 있었지만 '100만 해고 대란설' 같 은 이런 식의, 실제로는 악선동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중앙정부가,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의 주무국장이 주도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무엇보다도 노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은 사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동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팩트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함부 로 예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쉽게 기간 연장 빌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너무 과욕을 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그게 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 2년 초과 근로자 수가 그때 97만 명이었더

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해고될 것이다 이런 이 야기였거든요.

○참고인 이남신 예, 맞습니다.

○우원식 위원 실제로는 한 10만 정도 이렇게 됐는데 왜 노동부가 그때 이런 설까지 퍼트려 가 면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했는지 추측되어지는 바가 있나요?

○**참고인 이남신** 일단은 그것은……

○우원식 위원 그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전경련 분들하고 첫 회동을 하고 난 다 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비정규직법을 4년으로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정하자' 이런 게.

○**참고인 이남신** 일단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 지 논란과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 간제법의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 히려 기간 제한 방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원 포인트로 가서는 안 되고 투 트랙으로 최소한 사 용사유 제한을 병용하거나 사용사유 제한을 중장 기적으로 입법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제언이 사실 많았고, 실제로 당시에 국가인 권위원회가 이전에 진작에 권고한 내용들도 있었 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뜨거운 쟁점이 있는 와중이 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공론 화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사실 많이 청취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 4년으로, 그러니까 2년 기간 제한 방식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양 산하고 있던 시기에 4년으로 기간 연장해서 비정 규직을 오히려 더 항상화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류하경 변호사님, 아까 변윤석 참고인이 말씀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만약 9조2항이 삭제되면 교원노조법이 무력화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30일 결정 을 통해서 9조2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는데, 그 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노조법을 부정하는 권고를 했다는 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 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후속 조 치를 했는데 이런 후속 조치를 해요, '전임자 복 직 명령,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보 조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등을 이렇게 하는데……

97년 2월 11일 대법원 판례에는 '노동조합법상 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 가 있고요. 2004년 헌바 전원재판부 결정은, 헌법 재판소에서 '법외노조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 나 협약 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 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 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부의 단 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 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위법 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류하경** 우선 그 시행령 9조2항 삭제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 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0년에 삭제하라 고 권고를 내린 바가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1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전교조 해고자들을 이 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단결권 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재차 권고한 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9조2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교원노조법이 무력 화되는 게 절대 아니지요. 교원노조법 2조를 이 제 문제시 삼으면서,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겠지 요, 9조2항을 삭제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인 데 그 교원노조법 전체가 무력화되지는 않지요, 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 2조 는 반드시 개정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교원노조 법 2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헌법 33조를 부정하 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굉장히 독소조항 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교원노조법 2 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교원의 특수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원의 특수성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원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가 지금 굉장히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원의 특수성, 형체도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위험,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특수성이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정법을 계속 옹호하려는 반복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 37조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특수성 이게 무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희 논쟁 과정에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교원노조법 2조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이기때문에 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노조법에서 불필요한 2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교원노조법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수성 보장,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은 반드시 보장해야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원노조법을 만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후속 조치······

○참고인 류하경 후속 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례들이 다 맞는 판례들이고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헌법 33조에는 '법인만이 단결권을 가진다',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동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면 당연히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노동3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노조법상 노조가 아닐 수는 있어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개헌을 하지않는 이상은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들었을 때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절대 박탈되지 않습니다. 박탈될 수도 없고 박탈되어서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신문 순서는 다 끝났는데요, 최봉홍 위 원님께서 잠시 시간을 쓰시고 좀 확인하실 게 있 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류하경 변호사님, 확인 좀……

○참고인 류하경 예.

○최봉홍 위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교원노조법이 우선입니까, 둘 다 똑같이 지켜져야 됩니까? ○**참고인 류하경** 예,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요. 구체적으로……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3개 다 지켜져야 되지 요? 헌법도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교원의 특수성은 바로 국가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지금 임 병장이 저런 사고가 났는데 저 책임은 교육부장관과 그 가정이, 이 사회가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만큼 교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법은 헌법에 의해서 그다음 밑에 다른 법률이 죽 집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3권을 보장했다 하더라도 사회·정부 질서, 국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에 도덕이 있고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규율이 법률입니다. 그 법률은 악법이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교육을 맡은 교사가 먼저 그 법을지켜가면서 그걸 개정한다면…… 개정하는 채널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개정의 노력을 하면서 우선 현행법은 지켜나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 해 왔고 교사도 옛날에 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이 자기 불만을 가지고 헌법에 보 장된 자유다 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 아닙니 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참고인 류하경 교원의 특수성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원들도 법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가 단 9명이라는 것이 교원의 특수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최봉홍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해고노동자 9명이 나왔을 때 저희는 그 당시 민주당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2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만 조직이 있어 온 것을 왜 9명 때문에 희생을 시키느냐, 일주일만 하면 그 조직을 다시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이익분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류하경**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 니다.

.....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참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들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실에서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한 10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인데 오전에 우원식 위원님 께서 질의 시간을……

- ○**은수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의사진행·······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아까 오전에 경력에 있 어서 '연구와 판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허위 기재 아니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니다'라고 답 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구 및 판정에 관한 자료를, 입증할 자료를 달라고 했는 데 못 주셨어요.

우선 연구 자료는 없고, 판정 자료는, 판정과 조 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조정 자료를 가 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조정안조차도 없는 자료입 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해석해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의 허위기재를 원래 타깃 으로 삼아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기대 총 장 면접 서류에 기재를 하신 것은 사실은 사실관 계와 다른, 그래서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 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오전에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결국 저한테는 자료 제출 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위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는 기본적으 로 고용관계에 있어서 원청이 직접 가급적 채용 하도록 모든 분위기와 제도의 운영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가장 기본 철 학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할 때도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 내부 직원 들한테는 했고요.

다만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표현을 하면서 서너 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정사례에서 가급적 직접 채용하도록 권유했던 이런 부분들을 축약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보충질의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 씀드린 대로 우원식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못 하 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합해서 15분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질의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전에 17대 국회에서 환노위 할 때 많이 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위원님 자 주 뵈었습니다. 많이 지도받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17대 국회 말에 2007년에 비정규직법 통과시킬 때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또 본회의장에서 큰 갈등까지 있었고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반대하 고 그런 과정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 비정규직법 통과시켰다고 많은 비판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비정규직을 합법화시 켰다라고 하는 비판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비정규 직법을 만듦으로 해서 최초로 차별금지를 포함해 서 보호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 후보자께서 근로기준국장으로 재직하 고 계셨었는데 그때 2008년 8월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비정규 직보호법 시행을 반대하고 이것을 기간 제한을 2 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 이런 의견을 처음으로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100만 해고 대란설 이런 것을 노동부에서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100만 해고 대란설은 우리 근로기준국장으로 계셨던 후보자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100만 명이 어떻게 해고된다는 거였지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기준국장을 하면서 비정규 특히 기간제법의 기간 문제를 고민하게 된 배경은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

○우원식 위원 그분들 입장인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분들 입장이 그 전에, 법이 적용되기 전에……

○**우원식 위원** 2년 넘어간 분들은 이 법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장기 간 근속했던 분들이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연구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 비중보다는 아까 비정규센터 소장님 말씀하 셨듯이 풍선효과처럼 파견이나 용역이나 비경활 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우원식 위원 그래서 이 100만이 뭐였느냐고 요. 왜 100만이라고 생각……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기가 올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추정할수 있을까라고 해 봤는데 그 당시 통계로는 그부분을 정확히 추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때 100만은 이런 거였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우원식 위원** 2009년 7월 1일자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 2년이 넘는 근속자이게 97만 명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고된다 이것은 추정이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해고 된다고 추정은 안 했고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100만 되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언론에 얘기했던 것은 약 97만 명이되는데 그중에서 55세 이상은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 되는지는 현

재의 통계로서는 밝혀 낼 수 없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서 그 후에 보니까요, 100 만이라고 그러다가 이 주장이 좀 불합리하다는 이 야기가 많아지면서 70만이라고도 하고 또 그다음 에는 60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처음 들어서서 전경련 사람들을 만나서 전경련 사람들이, 저도 뉴스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전경련 사람들이 처음 요구했던 게 '비정규직법을 4년으로 개정을 해 달라'이런 요구였어요. 그 요구에 딱맞추어서 노동부가 그 이후에 이 법 시행을 반대하고 '4년으로 미루자'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전경련 쪽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저희는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그분들에 대한……

○우원식 위원 여론조사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론조사 이런 것이 있어요. 2008년 9월 달, 그러니까 처음 보고할 때쯤 2년 유지, 그러니까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유지 입장에 대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찬성의견이 40.8%와 35.9%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때 4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3.4%, 2.1%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요, 노동부가. 그러다가 2009년 10월 달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지금 하나 하나 통계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가장 중요 한 것은 기간제의……

○우원식 위원 저는 제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분들한테 의 견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저는 제가 이 법을 만드는 데 몇년 동안 아주 고심하고 이 회의장 안에서 민주노동당 사람들하고 갈등도 하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이 법의 통과와 반대를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당시에 한나라당 사람들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해서 이 법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노동부 직원들이 17대 국회 끝 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것을 4년 연장하는 그 런 논의를 시작하고 그것을 시행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지금 후보자께 서 그 일에 앞장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만 100만에 대해서 지금 분명치도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언론에 저희들 이 말씀드릴 때도 추정이 불가하다, 다만……

○우원식 위원 '추정이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하 면 됩니까?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100만 명이 해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됐어요. 몇 명 해고됐습니까, 이 법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뒤로 통계의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들 한 1만 명에 대해서 죽 우리가 추적조사를 한 게 있고요. 하나는 사업체 에 대해서, 이 기간제근로자들에게서 2010년 4월 부터 지금 14년 4월까지 사업체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분들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바로 정규직 되는 비중은 한 20% 미만이고요. 그 사 업체에 있다가……

○우원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때 그래 가지 고 법 시행되고 100만 해고된다고 그랬는데 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몇 명 해고됐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은 제가 약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 니다.

○우원식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렇게 된 배경 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그때 당 시에는 이미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해 온 반복 갱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반복되신 기간제분들은 정규직 전환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효과도 있고 그 분들이 ……

○**우원식 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단 말이 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정말 노동 자를 사랑하고 노동자들의 이런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후 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09년 7 월 달에 노동부가 집계한 실업급여 신청내역이 총 분석해 보니까 9000명이 실업급여 신청을 했 어요. 이것을 9000명이 다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노동부의 누적 해고 비율을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자가 1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해고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 되고 잘못됐는지, 전경련의 입장에 맞춰서 노동 자들의 기간 제한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으로 사용 하는 기간을 늘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입 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간 죽 논의를 했 기 때문에 노사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해 보면 인턴 형태의 청년을 제외하고는 다 기간을 연장 해 달라는 호소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 후보자는 당시 근로기준국장으로 있으면서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실상 비정규직 사 용기간을 강제로 늘려서 고용 불안을 부추기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한 가 지만 더 설명을 올리면 97만 명 정도가 2009년 7 월 1일부로 2년이 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 년간에 걸쳐서 갱신 계약을 하는데 1년 동안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고 일부는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다 그런 의 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 법 만들 때 후보자께서 전 과 정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통과됐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어떻 게 조정됐는지 그것도 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그런데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전경련 요구에 따라서 100 만 명이 해고된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 장을 통해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비정 규직법 개악 반대'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 위가 있었어요. 그런 불안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 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입장에 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

○우원식 위원 저는 말이에요,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는데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지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저는 원 외로 바깥에 있었습니다만 그것 보면서 도대체 1년도 안 된 시기에 비정규직법을 이렇게 논의해 놓고 정권이 바뀌니까 전경련 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만든 사람들이 좀 책임 있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주무 국장께서 지금 장관후보자로 왔단 말이에요.

제가 노동부를 맡을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회의적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저는 기간제·파견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입법 효과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또 해당되는 분들 모셔다가 많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 법이 기간 제한을 해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 아니면 풍선효과로 용역이나 또는 비경활로 갈 가능성이 더 크냐,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 그 얘기는 더 합시다. 그 얘기는 더 하는데, 100만 명 해고된다 이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희들도 100만 명이······

○우원식 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100만 명이 해고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 고 말씀을.....

○**우원식 위원** 100만 명이 해고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희들도 그 뒤에 언론에서 그런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100만 명이 해고된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원식 위원**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교조 문제인데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했단 말이지요. 그런 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동법 시행령 9조2항 '행정관 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 는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노사관계에 아주 정통한 관료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갖고 계 신 분이고.

이런 사례가 해외 법제에도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선 저는, 위 원님 더 저희들보다 깊이 아시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아니,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각국의 노사관 계법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저 는 느꼈습니다.

○**우원식 위원**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는 특수하니까 있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다른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교섭……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 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당노동이라든지 이 런 제도가 없어서……

○우원식 위원 아, 이것 참 앞으로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수하니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왜 대한민국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러니까 역사

성 · 현실성을 다 감안해서 단결 부분을 엄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섭권이나 이런 부분을 강 하게 보호할 것이냐, 국가별로 형편에 의해서 다 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후보자께서 쓰신 논문이 있어요. 단결권 보장 부분, 조합원 자격 관련해서.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우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 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는데, '98년 노사정 대타 협 시에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실업자도 가입하게 하자는 데 합의한 바가 있고 따라서 기업별 노조 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만 조합원이 되게 하 며 산별 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는 실업자 및 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직원노조는 초기업 노조라고 봐야 되지 않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교직원노조는 초기업, 기업별 노조를 따기지 전에 헌법에서 그 직무와 채용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으 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법에 충실해야 되 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기서 포함한 것은 아닙니 다.

○**우원식 위원** ILO에서 이런 권고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자도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것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은 전반 적으로 ILO에서……

○우원식 위원 '98년 노사정 대타협 시에 초기 업단위 노조에는 실업자도 가입하게 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것 초기업 노조가 아니기 때 문에 관계없다 이런 건가요? 논문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러니까 제가 논문에 언급했던 부분은 일반 노조의 경우에 장 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부분 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내줄 때 초기업단위의 경우에 일시적인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조합원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 라도 이렇게 설립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는

○**우원식 위원** 여기 논문에다 쓰신 것 아직도 소신이 변치 않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 ○우원식 위원 후보자 생각이시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제가 학자 로서 그때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 ○**우원식 위원**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 부분……
-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민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민현주 위원 오전에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셨던 시간제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 다.

시간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인한 일 자리 창출뿐 아니라 기존 정규직도 시간제로 생 애주기에 맞춰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도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마지막 답변 에서도 여성 경력단절이라든지 여성 고용 관련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 문제도 지적하셨었 고요

보니까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시간제 일자리 가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추진되고 있어 서 엊그저께도 언론에 이미 시간제 일자리 관련 해서 고용통계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개념 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 니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발 적인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정규 직 근로자, 종일제지요. 종일제 근로자에 비슷한 임금, 복리후생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되고 4대 보험 가입이 기본적 인 조건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념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제별로 보니까 규 모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해서 한 10.3%입니다, 2013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경활인구 중심으로. 남녀 비율은 오전에도 지적됐지만 72.1%고요. 그 런데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이냐의 문제에서 비자 발적인 것이 54.7%입니다.

이 시간제 일자리가 처음에 모델로 나왔던 네

덜란드 같은 경우에 9.1%였는데, 물론 역사가 훨씬 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4.7%에 달하고 있다는 것, 임금 수준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조건에도 불구하고 27.7%, 정규직 대비 시간제 근로자 임금 수준입니다. 4대 보험, 근로복지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향후 시간제 일자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우리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했을 때 기업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4대 보험료 감면이랄지 또 시간제 일자리 채용했을 때 지원 부분이랄지 이런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도 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까지는 채용형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면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육아나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했다가 또 그런 사정이 해결되면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제도 보완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간제 일자리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도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기업들이 소위 근로자와 고용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전향적으로 '근로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본인의 사정이 있을 때는 시간제 일자리를 하고 또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시각의 변화가 매우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마디도 사실 버릴 말 없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이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 다라고까지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정책도 그렇게 방향이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나타난 통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복안이 도대체 언제쯤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는 이 부분이 주5일제 근무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한 1100만 정도, 부부로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게 1170만 정도인데 그중에 한 500만 가구가 여성이 일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봤을 때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입직을 해서 육아나 이런 출산 때문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하려면 말 그대로 굉 장히 사회 전체가 변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무부의, 굉장히 또 많은 상생하고도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면서 사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우리 근로자가 한 번 들어오면 육아 때문에 나가지 아니하고 시간제로 전환됐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도가 그 기업이 소위 고용이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가장 중시해 주는 사회 분위기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노력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민현주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예.
- ○민현주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모두발언부터 매번 질의 때마다 시간제 일자리의 양적인 변화,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정부정책, 책임자들 다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다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 있고요, 저희조차도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그 업적으로서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민현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은수미 입니다.

아까 허위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간단하 게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 문 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우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저희에게 뭐라 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00만 해고 대란설에 대해 서 '당시 언론에서 이를 100만 해고라고 표현했 다', 출처가 언론입니까? 고용부는 100만 해고, 100만 명이 해고된다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 신 적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직접 100만 명 이 해고된다라고 저희들이 발표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년 동안의 계약 갱신에 해당되는 분들이 97만 명 정도 해당되는데……

○**은수미 위원** 다시 PPT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이영희 노동부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 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되느냐,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이런 언급들을 반 복적으로 해요. 100만을 고용부장관이 직접 언급 을 하십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은수미 위원 그래서 언론이 '100만 해고 대란 설'이라고 말을 하고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저기 표현들이……
-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 마 만나셨던 기억이 날 텐데. 제가 사실은 질의 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질문하겠 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서면질의에 이게 언론 에서 100만 해고라고 표현했고 노동부는 그런 말 한 적 없노라라고 발뺌하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저기 표현에도 있듯이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해고되거나……
-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100만 해고한다라는 말

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100만 명이 전 부 해고된다는 취지는
-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해고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고용부에서 단 한 번도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100만 명이 전 부....
- ○**은수미 위원** 계속 그 말을, 그 취지를 그러면 가져가시겠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PPT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계속 질 문을 해요, 고용부에게. '100만의 출처가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접 장관후보자께서 '내년 7 월이 되면 사용자들이 정규직화하기보다 해고하 거나 외주로 돌리려고 할 거고……',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 해고 대란설이라는 게 '설' 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본인들이 원하기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기간제 연장' 이런 얘기까지 하고 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 바꾸기를 하냐면 '7월 한 달 안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1년 사이에 차례로 해고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 바 꾸기 하셨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 ○**은수미 위원** 그런데 아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 1년 동안 다, 97만 명이 계약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 갱신계약 과정 에서 정규직이 되느냐 아니면……
- ○은수미 위원 '1년 사이에 차례대로 해고될 수 있다'라고 아예 인터뷰에 따 있어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분들이 그러 니까……
- ○**은수미 위원** 그리고 '1년 사이에 해고됐느냐?' 라고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는 계약갱신, 1년 동안에 계약갱신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일부는 정규직이 될 거고 또 일부는 계속 일할 수 없게 될 상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 ○**은수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계속 발 뺌을 하셔서…… 전 장관들은 솔직히 이 정도까 지 발뺌은 안 하셨어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저희

늗.....

○은수미 위원 임태희 장관께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숫자가 과장되게 알려졌다는 점은 인정하고저희들이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한다' 그렇게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0년에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고용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될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해 서 그들을 사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2010년 국 정감사에서 또 '거짓말이다'이렇게 주장을 했더 니 박재완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거 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잘못된 예측을 하신 당시 담당 국장이 신 장관후보자께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잘못된 예측을 했다고 당시 전 장관들이 얘기를 했어요, 책임을 지면 질 거라고. 아무것도 책임을 안 졌 지요.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별것도 아닙니 다. 사과하세요. 그 정도 사과도 못 할 정도라 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 씀······

○**은수미 위원** 지금 후보자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저희가 97만 명을 하면서 기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소위 55세 이상 또 다른 사업기간이 정해졌거나 하는 부분들이 당시의 통계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통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업무의 한계였다고 보고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100만 해고 대란설유포해서 비정규직법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아까 보여 드린 통계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가 논란이 돼요.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줄줄이 쫓아다니면서 실제 해고됐는

지 안 됐는지, 정규직 전환율이 몇 %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입법효과가 나타납니다. 47%, 300인 이상은. 평균 전체 몇 %입니까? 26.7%까지 나타나다가 100만 해고 대란설 유포된 이후에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10%대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2010년까지 조사한 거예요. 이런 조사 한 번도 안 해 놓고서…… 그다음에 기간제 보십시오. 27.2%까지 올라가요. 이거를 망가뜨린 게 바로 고용부이고요, 당시 주무국장인이기권 장관후보 내정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못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들은 그리고 책임지겠다, 잘못했다, 그말도 제대로 못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은수미 위원** 저하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에 사실은 이기권 국장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나 저하고 만났어요. 제가 여 쭤 봤습니다. '비정규직법 흔드시려고 하시는 겁 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이 입법 흔들려 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럴 일 없습니다'이 렇게 답변하신 거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기권 국장을 사실은 믿었습니다.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짓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무국장으로 그 짓을 하셨습니다. 이영희 장관, 임태희 장관, 박재완 장관, 이채필 장관 그리고 이번에는 장관후보자까지. 사과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통계가 한계가 있어서 97만 명 중에 기간제한이 제외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추정을 못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발표를 못 한 부분에 대해 서, 예측을 정확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그분들 현장도 가 보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

데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일하고 싶다'가 많이 있 었고 또 여론조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차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은수미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추가질의 하세요.

○**은수미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만하세요.

○최봉홍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영주 추가질의 해요.

○우원식 위원 추가질의 해요.

○은수미 위원 여론조사로 정책 하십니까!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영주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 의 때 하세요.

○**우원식 위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는 숨기고!

○**은수미 위원** 정말 이럴 겁니까!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 의.....

○**은수미 위원** 나라를 무너뜨려 놓고서!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 의해 주시고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영 위원 새누리당 양창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에 관한 거를 듣 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한 25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인데 한 해에 약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되고 이 중에 2000 명 가까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2년 산업재해로 입은 직접손실액이 3조 8000 억 원 이상인 거로 알고 있고 또 간접손실액을 포함해서 경제적 손실액이 한 19조 2000억 원 넘 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 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대부분 하청기업이나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 보자님,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에, 회원국 중에 1, 2위이고 또 특히 저임금 비정 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해서 사고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양창영 위원** 산업재해로 인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1년에 한 19조의 손실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우리나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압축 성장을 하면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또 기업들은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 을 투자가 아닌 손실로 보고 있어서 대단히 심각 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 를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안전은 불편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투자가 있어 야만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사업장 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자들이 비정규직이고 하도급근로자들이 많아서 원청업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 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도 위원님 말 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ㆍ하도급이 함께 일하면서 위험이 큰 장소를 확대 지정해서 그런 장소에서, 특히 중대 재해가 많이 일어난 작업장이나 현장에 대해서는 소위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위험장소로 지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책임에 있어서도 지금은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하도급은 5년 이하의 징역, 원청은 직접책 임이 아니라고 해서 1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원 청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무는 그런 제도 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 제로 선택했고 또 이제는 기업의 인식변화와 정 부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추진해야 될 과제가 무 엇이고 또 그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선 중대재해, 화학공장이나 또는 대형 건설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SM이랄지, 위험·유해작업 신 고랄지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또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철저하게 원인조사, 감

독 그다음에 종합진단, 개선명령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재해가 나면 기업이 엄청나게 손실이 난다고 해서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가 챙기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중소업체 재해율이 대기업의 한 3.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소업체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중소업체들의 안전보건지 원자제도를 운영한다할지 또는 안전보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 할지 또는 예방 노력을 하면 예방요율을 적용한다 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안전관리대행제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동안 규제 완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각 종 안전 관련 제도를 폐지했거나 또는 완화했는 데 그중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안전관리대행제도 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산업재해 통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재해가, 사망재해율은 사망만인율이 1.25입니다. 이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서 약 2배나 2.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재해율은 0.59입니다. 이것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서 각국의 일반재해에 대한통계기준이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쪽에 국 가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또 소규 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제도를 통해 서 의무고용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하 고 또 실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과 안전 관리대행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파악한 산업재해 통계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관리대행제도 는 경제발전이 우선시되었던 과도시기에 불가피 한 선택이었고 이제는 안전관리대행제도가 개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합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안전관리대행, 현재 300인 이상은 직접 채용한 게 한 4분의 3, 75%, 대행을 하는 게 한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50인 이상 전체로 따져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4분의 1, 대행이 75% 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별로 재해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을 저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곁들여, 산재 예방에서도 안전 관련 이익단체에게 사업주 역할인 안전관리 대행 을 시행하게 하고, 또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검사, 안전진단 권한까지 위탁한다면 정상적 이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 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종합적으로 안 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스터플랜 을 할 때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오전에 '분배 구조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와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보기 어렵다'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최근 한 10여 년 이상 우리 노동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유 연노동체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 없이 당면한 고 용노동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 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소위 유연노동체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해 주시면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여기 후보자께서 오늘 인

사말씀 중에 '유연근무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셨 거든요. 특히 시간선택제, 시간제일자리 이런 부 분들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접근조차도 할 수 없다 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연노동에서 고용 안전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때인 것 같거 든요. 북유럽식으로 유연안전성 이런 개념을 조 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 인 방향은 어쨌든 유연노동체계에서 고용안전성 의 문제들로 돌아가는-고용안정 말고요, 고용안 전-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수평적 개념은 아 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선형적인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지금 비정규직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금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32%부터 45%까지 굉장히 통계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30% 정도로 보면 아직은 유연안전성 개념을 더 도입하고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 만 45% 50%에 달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그것 을 줄이고 근본적인 어떤 노동정책에 대한 발상 을 전환해야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어 요?

그런데 대체로 정부가,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 표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 수치는 보면 굉장 히 낮은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요. 저한테 제출했 던 보고 자료도 보면 어떤 것은 15%밖에 안 돼 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용 형태 공시했던 자료 에 의하면 37%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특히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의 현실과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돼 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수치가 나 오면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제도나 발 상을 바꿔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신다는 느낌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우리가 32%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은 노 사정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만들 때 통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고민하다 가 노사정 간에 합의를 한 개념에 의해서 통계를 죽 경제활동부가조사에 의해서 작성해 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는 비정규직이 32.1% 이렇게, 약 591만으로 잡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을 시행하고 죽 이렇게 지켜봤더니 기간제근로자 한 15%를 포함해서 정규직이 아닌 부분이 한 18% 정도 있고요, 또 하도급 등 외주화 부분이 거의 한 20%가 있어서 규모가 클수록 위원님 지적하 신 대로 이런 전체 비정규직 부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냥 단순히 그 규모만 늘어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추세 자체도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간접고용에 재간접고용에…… 간 접고용업체 자체도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하는 이 런 실태들을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시면 잘 아 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런 심각성을 보고도 '이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이 런 생각을 못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래서 지금 위 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기간제, 파견 또 하도급, 용역, 여러 형태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기간제나 파견에 대 해서 많은 보완 장치들을 해 주셨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이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효력확장 제도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도 했고, 이 부분이 하반기에 작동 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보완을 어떻게 해 갈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 해서 그 자체의 허구성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직업이 공식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없었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게 아 니라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 공식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이 고용률 70% 높여 주고 이런 과정으로 연결되 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고용률을 70% 높이려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추세로 가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났고…… 개개의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계속해 가지고 장관이 되시면 따질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연노동성을 강화해서 유연근무체계들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고용률 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로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이 런 것들이 맞지 않는 발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연안전체제에서 이제는 고용안전한 이런 체제로 바꿔 가야 되거든요. 유연노동체계에 서 고용안전성의 문제로 확실히 바꿔 가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이게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하고 유연노동체계를 고용안전체제로 바꿔 가는 문제하고 같이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관님이 일자리 많이늘리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한다 그래 봐야 백날 제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고용 안정, 고용 안전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의 탄력화랄지 임금체계의 변화랄지 이런 의미의 유연성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게 15년 전에 유연노동체계가들어올 때의 개념이세요, 그게. 15년 동안 적폐가나타난 상태 속에서 그것을 바꿔 가는 개념은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후보자님, '이태백·낙바생·청백전'이라는 단

어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자스민 위원 후보자께서 노동부 고용정책심 의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7년도 국정홍보처에 기고한 글에서 직접 인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에 빗댄 신조어들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청년들이 취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좀 더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의 준비 단계 그다음에 취업의 입직 단계 그리고 또 계속 일하는 단계로이렇게 나누어서 청년 취업을 도와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2012년에 한기대 총장으로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도 후보자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2007년의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청년실업은 어느 한당사자만을 탓할 수 없는 청년층의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 즉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글 내용 중에서, 지금 보니까 모두발언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발언 5 페이지에 '특히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에서 마 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으려면 2·3차 협력업체 에서의 일자리 질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라 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대기업 성과가 중소협 력업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중점적 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대기업 협력업체 상생을 우리가 평가하고 지수화 할 때 자기와 직접적인 1차 하도급 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1차 하도급 업체가 2차・3차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을, 1차 하도급에게 평가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기업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언 론에서나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성과를 많이 낸 것도 좋은 기업이라고 하 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것도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2차・3차 벤 더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봐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함 께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제가 외통위를 하다 지금 환노 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 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인데요.

청년실업 문제와 연관을 지어 한 가지만 더 문 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청년의 도전적인 해 외 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협소 한 취업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외 국으로 취업시키는 K-Move 정책이 시행 중인데 요.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K-Move 정책의 실질 적인 효과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K-Move 정책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인턴 제도와 유사하고 해외에 진출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다 는 지적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 나가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과 K-Move 정 책의 앞으로의 목적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게 K-Move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발굴할 때 그냥 이런 단순 일자리 는 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우리 KOTRA의 K-Move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우 리 한상회랄지 이런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괜찮 은 일자리를 먼저 발굴하고 그게 국내의 정보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K-Move 스쿨, 우리 국내에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렇게 해외에 취업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에 그런 어떤 경험을 가졌거나 해외에서 지금 취업을 하 고 있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처음의 준비 단계부터 입 직을 해서 이렇게 죽 적응해 가는 어떤 멘토 역 할까지도 하겠다 그런 취지가 K-Move 사업입니 다.

○이자스민 위원 듣기는 되게 좋기는 한데요, 막상 보면 예산 내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 다. 결국은 이 제도를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아마 장관님이 되신다면 앞 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에 대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 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같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 는 것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 것에 따라서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 지침'이라는 것을 4월 25일자로 냈습니다, 기획재 정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문서 내용 그대로 옮겨 온 것 인데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8개 그리고 방만 경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20여 개 해서 토탈 38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래 내용 보시면 별표 에 '단체협약 미타결 등 방만경영 개선 노력에 부진한 기관은 임금동결하겠다'이렇게 되어 있 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대표자에 대한 어떤 해 임. 기관장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첫 질의 때 마지막에 언급했던 부분 인데 공공기관 방만경영…… 아까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 정상화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첫째, 일단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가 있는데 여기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이 런 것들이 공공기관 문제의 핵심인지, 이것만 해 결하면 공공기관의 문제는 해결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공공 기관의 부채 문제는 경영의 어떤 큰 변화랄지 이 런 부분들이 더 큰 부분이라고 하고 정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장하나 위원 정부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왜 그러면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낙하산 인사고 뭐고 해서 적합한 인사인지, 임원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행 방안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관피아 등등의, 어쨌든 공공기관 인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부분 은......

○장하나 위원 이후로 말고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민 전체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과다한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줄여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일단 기관별로 대체 과도한 복리후생은 뭔지 세세히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교조 얘기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어차피 공공기관 노사관계도 노조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반드시 지 켜야 됩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기재부가 단협 타결을 안 했을 때 임금동결을 하겠다는 등 나오 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져요. 노동 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이 것은 깊게 따져 볼 것도 없이 제3자가 지금 부당 노동행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 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경영 상황이나 이렇게 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차등하겠다는 부분까지를 부당노동으로 보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이익 변경이 있다라면 분명히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그렇지 않다면 과반수근로자의 동의 이런 절차적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지키도록 정부가 또 고용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까 보셨지만 단협 타결을 안 했을 때 임금동결하겠다라고 너무, 그러니까 저

도 저게 정부부처가 하는 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잊은 것처럼 저런 문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어서 너무 우려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것 봐 주시면, 이미 LH공사에서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단협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아까와 같은, 지금 기재부에서조치를 하니까 이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협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노조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고발 건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8월 총파업도 얘기를 하고있고요.

최근에 양대 노총의 공공기관 노조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단체로 이런 기재부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노동조합에서 여러 형태로 하고 있고, 어떻든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고용부가 죽 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이면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1분 더 마무리 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방금 후보자께서 기획재정부가 하는 조처라도 법상 위반되는 것이 없이 역할을 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기존의 한기대 총장님 하시면서, 또 언론에서라든가 이렇게 입장 표명하신 게 근로시간단축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답변서를 보니까 지난 노사정소위가 우리가결론은 못 냈지만 그때 진행됐던 논의들을 보고계셨다고 하고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답변으로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장관님은 근로시간 단축 어떤 정부안을 가지고 어떻게 노사정의 대화를 이끌어 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노사정 소위에서 결국 정부안은 특별 연장근로인가요? 없던 것을 더 도입해서 결국 68시간을 하자는 거 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겉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했지만 꼼수다, '특별 연장 근로'라는 없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정부의 생 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구체적으 로 드릴 수는 없고요, 개괄적으로 드린다면 전체 지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총량은 가급적 줄여 가는 쪽으로 규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 면서도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근로시간의 탄력화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장해서 총량 적인 감축 속에 탄력화된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 고 또 총량적 규제를 줄여 가는 부분이 지금 중 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감소 또 중소기 업이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어떤 업무량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속도를, 거기 를 좀 고려하면서 총량을 줄여 가는 쪽이 옳지 않 나,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의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 다임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 분야 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심각 한 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근로자의 안전중시도가 OECD 회원국 15개 국가 중 12위 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현대제철 순천공 장 협착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탱크 폭발 사고 등 계속해서 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학이나 대형 제조사업장 에서의 사고는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작업 프 로세스 및 안전 관리체계의 공유·관리 부실, 협 력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 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산재사고가 계속해서 일 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관련된 4대 수칙을 노사가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보 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청에서 좀 더 안전에 대 해서 '안전은 우리 책임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혹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계획 하고 있는 산업안전 분야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朱永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논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해당 계획이 산재관리 시스템 을 더욱 세부적으로 만들고 산재 발생과 관련한 원청의 책임범위를 넓히고 사용자 측에 대한 근 로자 측의 산재 관련 권한 강화 등을 중요 골자 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런 것도 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원청의 책임범위를 얼마나 넓힐 것인지, 노조에 안전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 등 노사 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 다. 만약 장관이 되시면 바로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노사 간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안을 놓고 노사하고 협의해 가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또 현 장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 라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노 사정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을 줄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 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후보자께서도 노동부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정부는 매번 큰 산재사고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만들겠다, 계획을 내놓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의

재해율만 봐도 2012년과 2013년 재해율이 모두 0.59%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관리 감독, 사용자 측에 대한 책임 강화도 중요하지만세월호사고에서 보듯이 종사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직업의식,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대한 직업윤리교육 강화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 현장의 안전에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환경을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이제까지 대형사고 예방이랄지 또 소규 모 사업장 안전장치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에 가 장 필수적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또 모든 작업장 에 안전표어를 붙이고 또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 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〇朱永順 委員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정도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이 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기회가 된 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朱永順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후보자께서 한기대 총장 재임하실 때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기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 조합원의 고용안정, 능력 개발,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 록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 개선하라 명령을 받 으시고 노조가 반발했지요. 그런데 소나기는 피 해가야 되니까 올해 3월 달에 이걸 개정을 하셨 습니다.

직원이자 조합원인 당사자들의 고용안정, 능력 개발, 인력관리 등 스스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된 것은 노사가 함께 고민 을 해야 됩니다. 다만 동수 구성에 과반수 의결 을 하게 되면……
- ○한정애 위원 동수 구성에 과반수 구성을 하기 까지 온 것도 노동조합이 쟁취해서 온 거잖아요, 노사가 자치로, 노사 자율로.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노동3권이……
- ○한정애 위원 예, 노동3권을 가지고 쟁취해서 온 것인데 그것을 노동부 종합감사관이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기본적 인 것은……
- ○한정애 위원 이게 교원노조인가요, 공무원노 조인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노사가 함께 고 민을 하지만 노동3권이 보호되듯이……
- ○한정애 위원 노동부 또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는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의해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 기고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부문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저희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단체협약은 많이 고민을 해서 고쳤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김대환 위원장께서…… 공공 부문이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양대 노총 공공 부문이 공공 부문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려서 공공 부문에 너무 심한 간섭을 하는, 그것도 기획재정부가 이상한 지침 같은 걸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가게끔 만든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 노조에서는 성남지청에다고소·고발까지 할 정도의 형해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 이것은 사회적 타협이, 사회적 협의가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께서 아주 기획재정부를 노사정 대타협 테이블에 불러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오석 현재 경

제부총리가 노사관계와 관련된 것은 공공 부문 노사관계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 거기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노동부 감사실에서 하 고 있는 행위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 고 있는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 또는 공공 부문 정상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 을 시행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노동부 감사실 에서 지적했던 것은 2012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한정애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기본적으로 공 공 부문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노사관계는 노 든 사든 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치와 자 율이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내 리고 있는 지침은 법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요.

○**한정애 위원** 법사항이 아니지요, 법사항이 아 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자체 가 공공기관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 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는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기본적으로 국 민 입장에서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정부 전체 가·····

○한정애 위원 아니 좋은데, 그런 것을 합의를 하고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어 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협의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협 상의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 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형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화는 죽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형식논리로 보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 안에 어떤 소위를 꾸리든지 간에.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었고, 노사 정위원회에 근무하신 적도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만일 기회 가 주어진다면 여러 사정들 좀 들어보고 어떻든 대화가 될 수 있는 방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어떻게 대화를 끌어내시겠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신뢰가 가 지 않는 것이 전임 방하남 장관이—아직 현직이 군요—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동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테이블로 끌 어내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단 한칼에 6월 12 일 공공 부문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 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지 침만 내릴 뿐이다 하고 참여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최경환 경 제부총리 후보는 이 정권의 실세이기도 한데 그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테이블로 끌어내 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들어가 게 되면,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양한 방법 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어떤 다양한 방법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지금 제 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 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런 상황도 파악을 안 하셨어 요?

공공 부문 양대 노총에서 공공 부문 공대위를 꾸려가지고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하고 노사정위 원회에서 김대환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 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후보자 되시 는 분이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갑 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정애 위원 노동부의 의지를 밝히셔야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 정도도 못 밝히실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정애 위원 어떻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방법에 대해서 는……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 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들어가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최봉홍 위원 후보자님, 지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주·하청업자·재하청·하도급·재하도급·소개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노동은 제공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요? 그것이 사회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안정법에 보면—근로기준법 제9조에 도 나와 있습니다—중간착취 배제 이 조항 지금 살아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지금 직업안정법상 소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간착취로 법률로 다루도록 해놨는데 진정사건이나 근로감독 처리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거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장관님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특히 중간착취 근절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문제가 확립이 되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맞추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이번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관피아·해피아, 심지어 노피아, 저도 노총에 갔으니 노피아입니다.

우리 사회 전 구조가 삼성 산하에는 '삼성피아' 가 있고 LG 산하에 'LG피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피아'가 세월호사건으로 연유해 가지고 나온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100만입

니다. 그 100만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까지는 전부 다 구석 구석 자기 전문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길이 전부 차단되고 나중에 법이 된다면 3년 내지 5년간 못 한다 했을 때는 이 사람들 전부실업자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라는 문제는 이 사회가 키워놓은 인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좀 나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당장 맡아야 할 문제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인데, 지난번에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통상임금 나왔을 때 제가 전 장관님하고 직원들께 그랬습니다. 통상임금 판결나기전에 노동에 대한 전문가니까 당신네들이 좀 합의안을 하나 만들어 봐라 했는데 전부 안 하고 있다가 통상임금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운영 자체도 그렇습니다. 항시 3년 하고 나면 1년 임기 놔두고 갈아치우고 1년, 1년 연장 몇 번 해 주고 또 갈아치우고 낙하산 갖다 넣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노동부가 좀 앞장을 서 가지고 실적을 잘 올린사람, 잘 운영한 데 그런 곳에는 장기근속을 할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이사장이나 이사나 감사나팀워크를 맞춰 일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제도를 제가 권고하고 싶은데 되시고 나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협의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부 유관 기관의 노사관계 문제 전체를 일괄적으로 타결하 라는 그 안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한국노총에서 저도 한 15년간 서울에서 교섭하는 것을 쭉 보아 왔습니다만 만들어 놓은 법은 항상 악법이고 또 항상 시끄러운 것은 공공기관과 금융이나 그런 화이트칼라 노조였습니다. 그사람들이 모이면 전체 안건을 한 뭉텅이로 가지고 옵니다. 노동부 유관기관은 노동부 유관 노조위원장이 노동부에 가지고 오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가져가고 그다음 기재부나 대통령한테는 전국의 것을 한꺼번에 모아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근로조건 사항, 단체협약 사항은 열 군데

같으면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해결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해 주겠습니까? 할 것도 못 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공공 노조는 그런 식으로 십수 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권유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노사 문제는 해당 이사장과 해당 위 원장이 싸움을 하든지 심지빼기를 하든지 거기에 서 결정을 지어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해결하는 데 빠를 것입니다.

장관 되시고 나면, 이 문제는 제가 노사교섭을 해 본 선임자로서 권유를 드리는데 그런 방향으 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현 위원** 새정치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중대 재해예방 종합대책 같은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데도 산업재해 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현대중공업 화재 나 울산의 후성, LS-Nikko 동제련 폭발 사고 같 은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 면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도 증가 추세입 니다. 이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 고, 왜 그렇게 요새 사고가 빈발하고 있을까 그 원인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재해율이나 또 는 사망 사고는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형 사고 또 국민이 깜짝 놀란 사고 들이 이어져서 체감하는 어떤 안전은 아직도 굉 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사고 가 안 나도록 우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고 보고 있고요.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기업 은 예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가기 때 문에 최고의 사업주가 '안전에 대해서는 내 책임 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 어 주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것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고가

난 것을 은폐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형 사고 같 으면 우리 국민이 알게 되는데 산재사고들이 발 생을 해도,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입찰 때 감점되 는 것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걱정해 가지고 내 부적으로 회사에서 그냥 공상 처리를 해 버리기 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진료로 치료받고 나중에 회사한테 치료비 청구하 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숨기고 넘어가는 산재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 큰 문제지요. 그 래서 이런 것이 적발되면 정부가 어떤 제재를 하 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선 은폐 자체 에 대해서 과태료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 고요.

만약에 산재요율을 개별요율로 하고 있는 사업 장에서 개별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은폐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은폐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시 불 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현 위원** 이런 산재사고 은폐가 누적되면 가령 입찰을 배제한다거나 사업주한테 어떤 처벌 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 요, 좀 더 강하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공공기관 입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석현 위원** 그냥 과태료 좀 내는 정도로 가 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이상의 방법 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또 위험한 작업을 대개 하청을 주는 모양이에 요. 그래서 작년에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그때 사망자가 6명 났는데 그 6명 전원하고 또 현대제철 질식사고, 5명 죽었지요. 그런 전원들이 다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위 험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청을 주는 행태가 있 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을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우선 총괄안전 관리자를 원청에서 해서 모든 안전과 관련된 정 보를 그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에게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대 재해가 날 만한 그

런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비록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하청이 같이 책임질 수 있도 록 그 위험 작업장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나게 되면 과거에는 실 제 그 작업을 했던 하청업체하고 원청의 책임이 좀 달랐습니다. 그 책임을 같이 무겁게 묻는 쪽 으로 해서……

○**이석현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다. 원청업체에서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 는 것인데 그때 일어난 사고가 예상되는 사고였 을 때는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같이 물어 주는, 크게 물어 주는 게 맞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문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던 최저임금 관련 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OECD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이 각 국별 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쓰는 데도 있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쓰는 데 있고, 통상임금에서도 정액급 여를 쓰는 데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 내에서 좀 깊이 있게……

○문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당연히 따라 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적인 부분 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4인 생계비가 166만 원입니다. 166만 원인데 116만 원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관후보자께서 결단력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다, 시간제 일자리다, 파트타임이다 다 대답하셨는데 사실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고 뭐 하나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OECD 기준에 좀 맞출 필요가 있고 그 기준만 맞추면 비정규직 문제 또 시간제 일자리 문제 이 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다, 그 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같이 임금이 인상되지 않 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낙수효과 얘기하셨 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낙수효과 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생 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부족하다고······ ○**문대성 위원** 제가 본 입장에서는 물이 나오자 마자 얼어 버렸어요. 밑에 떨어질 생각도 안 하 고 꽉 죄고 있다고. 이것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얼은 물이 흘 러내려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저쪽 밑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까지 다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 은 꽝꽝 묶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정부나 기득권에 있는 층은 다 대 기업이나 사 측의 편에 가 있는 것 같고, 국민들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최저임 금을 어떻든 우리 근로자들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올리자, 인상을 하자는 그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 고요.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하는 소위 소득분배 개선 부분을 앞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문대성 위원 꾸준히가 아니고 장관후보자께서 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번에 장 관 채택이 되면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OECD 기준에 맞추고 퇴임을 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ECD······

○**문대성 위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정 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 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오늘 노 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근 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TV 앞에서 월드컵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야 된다고 요.

그런데 지금 시청률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기 국회방송 얼마나 나오겠어요? 보이지도 않을 정 도로, 그만큼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이제 는 포기 상태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어떻든 최저임금이 소득 격차를 이렇게 하도록 보완적인

장치들을 계속 강구해 가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예, 강구해 가는 것도 좋은데 저 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문제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끝까지 하겠다', 어떤 수장이 딱 되면 확 고하게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몇 가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문대성 위원 스포츠든 어디든 리더가 처음 되 면 내가 이것 몇 가지는 꼭 해결하고 가겠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굉장 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게 악순환 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되 는 거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의지와 추진력이 없는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라는 것은 수용하 기가 어렵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전체적으로 통 상임금이 중위임금의 50%까지는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OECD 기준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최저임 금을 올려서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자는 취 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저도 하 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료 감면이랄지 또 제13개월 월급이라는 EITC에 대한 보완이랄지 이런 부분 을 같이 함께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 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문대성 위원 통상임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 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문대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가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 세요? 이 부분은 통상임금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요. 왜 그러냐, 거의 90%가 대학교 대학생들, 대 학교 학업 중에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 학생들이라고요. 학생들이 에요, 학생들. 통상임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 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기준에 맞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일단 최저임금의 최 고 근로자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지금 확 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학생 들인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학생들 아르바 이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년층 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거의 대부분····· 80%, 90% 가 까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종합적으로 파 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청소년들의 그 괜찮은 일자리가 결국에는 최저임금만 올리면 전체 다 괜찮은 일 자리예요.

○**위원장 김영주**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환노위 와 가지고 이 노동정책에 관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를 듣다 보니 정 말로 쉽게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부터 통상임금 문제 또 근로시간 단축 또 조금 전의 최저임금 문제까지 각자의 생 각이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 하나의 단일한 결론을 내는 것이 지난한 작업이구나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여야의 의석 구조 내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뭐 하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 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년 고용했을 때 2년 고용 후에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 직으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강제화하는 법을 만들 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그런데 여전히 한 30%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그 정규직이라는 것이 신분이, 고용이 안정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과연 임금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그 기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 해서 저도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70%는 비정규 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또 사람에 따라서는 해고가 되면 그냥 그 직장에 비정규직이지만 그 봉급 갖고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에요.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해 놓으니 까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야 되고 또 다른 직장 을 찾아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근로 기준국장 시절에 여러 무슨 조사라든가 면담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책적으로 4년으로 좀 늘 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저는 그 정책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고육으로 서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근로자 중에서 그 직장에 비정규직이라도 계속해서 고용되기를 원 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 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한 방 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래서 그때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사용자한테 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또 근본적 인 문제가 들거든요.

우리나라 정규직은 고용이라든가 고용안정, 임금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정규직 보호는 굉장히 저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그러면 파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은 100% 안정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도 또 정규직으로 다해 줘라,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연간 한 15%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득 2만 3000불에서 4만 불, 5만 불로 계속해서 갔다면 벌써 저는 해소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 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해결 이 안 된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 이 경제 환경, 고용노동시장의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서로 마음을 열고 진짜 뭐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치도 안 나가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으로, 진보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답답하고 우리 후보자도 진짜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그야말로 뭐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제도인 가 한번 고민해서 설계를 하시고요. 그 설계한 대로 여든 야든 또 노든 사든 한번 설득하는 작 업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과거의 제도와 다른 제도를 설계해서 밀고 나갈 때가 됐 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한 본인 의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라고 생각하고 또 비정규에 있는 분들도 가장 중 시 여기는 부분이 격차 해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환노 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도 보완을 해 주셨기 때 문에 법을 통해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법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 면 적법 하도급의 경우는 현재는 다룰 수가 없습 니다. 또 기간제나 파견이라 하더라도 동일 회사 의 유사 안이나 비교 대상이 없으면 또 다룰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은 정규직 노조가 또는 기업이, 비록 파견이나 기간제로 있 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격차가 나지 않도록 훨씬 더 많 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지도를 하고 또 노사가 참여해서 협약을 맺도 록 해 갈 계획이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 셨듯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노노 간, 노 사 간에 큰 생각의 방향이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향이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정성을 다해서 서로 협의 하고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1차 질의와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 은수미 위원 님,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은수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저는 힘없는 약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등에 칼을 꽂는 행위만큼 비 열하고 사악한 행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나치의 아우슈비츠까지 경험했던 세계적인 석 학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악함, 그런 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평 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본을, 기준선을 넘어 버리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용부장관들 그리고 고용부의 고 위관료들을 봐 왔습니다. 혹여 선을 넘으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번 그런 자문을 저는 장관후보 자께서도 해 보셨으면…… 안 하셔도 어쩔 수 없 으나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못살게 굴지는 않 았는지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 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가 저는 고용부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국회 역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으나 저는 고 용부가 비정규직 입법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정규직 전환될 것을 희망했던 사 람들의 그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는 행위 를 아주 구체적이고 낱낱이 봐 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고용부의 향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 처하고 가장 사회적 약자의 핵심적인 문제, 존경 하는 문대성 위원님께서 벌써 두 번이나 질의하 셨던 최저임금 문제를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최근 정부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농림어업 종사자 등등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그래서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장관후보자께서 도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2008년에 비정규직법을 뒤흔든 경험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만약 장 관이 되신다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 을 배려하고 고민하고 또 정책의 최우선으로 둬 야 된다는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일을 함에 있어 서 그 부분을 가장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견 문제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는 않는다'이런 말씀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최종적으로 입 법이 되어야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닙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일정 하게 입법권을 우회해서, 국회를 속여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가 그동안 했던 일입니다. 그래 서 여쭤 보는 겁니다. 또 하시겠느냐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규율을 할 때 조금 더 대우를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 이 단계화가 되어 있다라면 조금 더 상위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역행을 할 지, 풍선효과로 나쁜 쪽으로 갈지,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위로 갈지, 또 그분들은 절실하게 일을

원하는데 제도가 막고 있는 건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은수미 위원 이미 종합적인 평가는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씩 사악한 행위를 하지는 마십시오. 고용부는 선을 넘은 겁 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국회와 전면전을 한다, 저를 밟고 넘어가십시오.

분명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 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최저임금 7.1% 인상된 것은 아시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은수미 위원** 고용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 있습니다. 퀴즈를 내셨더라고요. 물론 장관후보자께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라고 퀴즈를 냈는데, 그 댓글이…… 좀 아시라고 제가 댓글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로 '정말 너무해요',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습니다', '최저임금지켜지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4000원 주는 데 있어요', 저도 이거 확인한 바 있습니다. 4000원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쥐꼬리만큼 오르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시간 힘들게 일하고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대한민국 시간알바 들은 문화생활도 마음껏 누리지 말라는 윗분들의 깊은 뜻 명심하겠습니다'이런 증오감까지 곁들 인 댓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 특히 문대성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참 애매한 답변 하신 것이 혹여 2008년 근로기준국장 때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근 최저임금제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 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 노라…… 그 당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동안 어떻게 되는가를 한 번 보면, 보십시오.

DJ정부하고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은 사실은

소득 조정분, 소득분배 조정분 이런 언급도 없었 지만 평균 10.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기권 국장께서 근로기준국장을 하셨을 때부터 낮아졌다가 간신히 요즘 7.1%, 그 래서 평균 한 5%,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주정부, 참여정부 때의 10% 이상, 평균 10.6%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불안정을 야기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고용불안 그 러......

○**은수미 위원** 말하자면 그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딱 한 번 최저임금위와 합의를 했는데 요, 그때는 노사정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6.1% 인가 그렇게 올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장 열악한 계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1년 이하 근로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도 못 하도록 법률 개정도 했고 또 최저임금 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켜지도록 기획수사도 하도 록 했고 그런 노력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국민들은 장관후보자께서 그해 여름에 하신 일을 알고 있는데 본인은 당신이 하 신 말씀, 그것도 언론에 기록된 말씀도 어쨌든 한 적이 없다, 혹은 다른 취지였다……

어쨌든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최저임금을 더 적게 줘야 된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 게……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의 근로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근로빈곤이 뭔지는 아시지요? 일하는데도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일을 하는데 왜 빈곤해? 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액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이런 발언 한 것도 기억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때 그 취지는 장년고용이 굉장히 어렵고, 동일한 선상에 놓게 되면 어르신분들 채용을 안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하는 취 지였습니다.

○**은수미 위원** 최근에 55세 이상 고용률 무지하 게 증가하는데 근로빈곤율 무지하게 같이 증가하 는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새로……

○은수미 위원 이것도 같은 일 반복하지 마십시 오.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될 겁니다. 고개 를 끄덕끄덕하신 것 모든 위원들이 봤다……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 하도 말씀을 하셔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근로 형태별 최저임금 미만 율…… 아까 뭐라고 문대성 위원님께 답변을 하 셨느냐 하면 '최저임금은 제대로 준수하게 하겠 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늘어나서 2013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가 최 저임금 못 받습니다. 시간제 알바의 39.8%,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55세 이상 35%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여성일수 록 더 못 받고요, 사회적 약자일수록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이 지켜 지느냐가 대한민국이 국가냐 아니냐, 고용부가 고용부냐 아니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키십시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은수미 위원 그리고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보 고하십시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은수미 위원** 마지막으로 전교조 문제에 대해 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인 때도 우원식 최고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문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 각합니다.

교육부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단체교섭 중지, 단협 해지 통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 판례 1997년, 헌법재판 소 2004년에 따르면 헌법상 노조 혹은 법외노조 는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가집니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동 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소할 권리가 없을 뿐입니다.

때문에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저는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이런 문제를 야 기시킨 고용부장관후보자께서 만에 하나 고용부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교육부의 위법한 조치에

••••••

대해서 정부 부처 내의 한 일원으로 분명하게 지 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떻든 그 판례 의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 판단 그다음에 이 번의 전교조에 대한 판단 부분이 비슷한 성격의 것인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 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조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 니까?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종합적 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 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시절에 본인께서 했던 일 중에 치적이랄까요, 그래도 본 인께서 스스로 평가하시기로 복수노조 창구 단일 화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토록 한 것들도 꼽 았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 7월 1일이니까 며칠 지 났는데 복수노조 시행한 지 만 3년 됐네요, 그렇 게 됐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장하나 위원** 일단 단점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특히 지난-2012년이네요, 벌써-환노위 국정감사 때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 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기존에 있던 노조들을 없애 는 방식으로 새로 기업노조들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지배개입이나 부당노동행위 있었다 이런 것 들이 언론에 많이 나온 바가 있었고, 많이 보셨 을 거예요.

그때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서', 그런데 검찰에서 다 불기소로 이러한 노조 파괴 행위들이 재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까지 좀 알고 계십니까, 후보 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개별개별 사업 장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장하나 위원 모르세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 ○장하나 위원 대다수가, 특히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무법인이 껴서 노조 파괴를 직접적으로 사측과 공모해 가지고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이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했다는 이런 사실들이 노동부에서는 기소 의견 송치했고요, 여러 가지 기소사실 중에 그 부분들만 다 불기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없이요.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창조컨설팅 사건은 결국 법의 심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외에도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전체 한 900개 사업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이 복수노조제도를 기존의 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예가너무 많아서, 한두 군데 특이한 게 아니라 너무흔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이 장관직을 맡게 되시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대로 노조들이 모든 어떤 피해와 고통을 전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다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든 사든 분명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치와 자치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개입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법 위반이 있으면 그것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참고인 질의 때 모니터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조 관련해 가지고 여당에서 추천했던 참고인 변호사가 얘기를 하시기를 "'노조 아님' 통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용노조나 이런 부당한 지배개입에의해서 만들어진 노조가 있을 때 그럴 때도 '노조 아님' 통보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 됐을 때"라고 했지만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방하남 장관때는 이렇게 부당하게 지배개입해서 만든 노조에대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하고 새로이 설립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지배개입사실이 있더라도 어쨌든 조합원 각각의 노동자지위들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조 아님' 통보 할 수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장관께서도 그런 행정조치 같은 것…… 저는 노동부가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봐요, 사실. 뭐 법정에 못 갔다고이 사람들이 계속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만 해야되고,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됐는데 저는 노동부가 훨씬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떻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훨씬 더 강화를 한다 할지 강도 높은 어떤 수사를 해 가도록 하겠고요.

○장하나 위원 아니,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붕뜬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노동부는 '우리는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불기소라니까 뭐할 수 없다'하고 끝난 거예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도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부당노동에 대 해서는 엄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이 창조컨설팅 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놔두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 용해 가지고 이제는 아예 사 측에서 '아, 이런 식 으로 기존의 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 데도 법적인 제재 받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불기소처분 받는구나'이런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가 여기서 '우리는 기소의견 송치해서 할 것 다 했어'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몇년은 안 되고 거의 1년째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맡게 되시면 이 사태를 이렇게은폐해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청문회 후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앙대 박사

과정 수업 건을 저희가 확인을 재삼재사 했는데 중앙대 박사 과정은 특수대학원이 아니고 일반대 학원이기 때문에 주간수업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편성은······

○**한정애 위원** 편성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업 은 교수하고 상호간에 합의해서 야간에 개설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주간 9시간에 해당되는, 즉 세 과목에 대해서 다 2년 동안을 야간으로 돌렸다는 얘기인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사실이 그 렇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두 과목 을.....

○한정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증빙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학과에서는 자기 들은 그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들은 특수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수업 위주 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아마 학 교 측에서는 원래 주간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렇 게....

○한정애 위원 자, 좋습니다. 설령 야간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계셨던 기간이 1998년 4월부 터 2001년 2월인데 1998년 4월이면 97년에 IMF 가 있고 98년 2월달에 어거지로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요. 어거지로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지 한 이삼주 만에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노사정 합 의가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98년 내내 정리해고가 시행이 되었었고 그 과정 에서 민주노총은 그것에 반대해서 노사정위를 탈 퇴를 했고, 그 정리해고 상황은 1999년에도 계속 진행되었었고요. 노동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 고 청와대가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기가 아니었 었습니다, 특히나 노동 쪽을 맡고 있는 행정관으 로서. 2000년에는 금융노조가 최초로 파업까지 했었습니다, 2000년 7월에는.

그 상황에서 1주일에 3일씩 빠져 가지고 저녁 에 수업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과연 대한민 국 그 IMF 이후의 그 복잡했던 시기에 노동정책 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로 그러면 뭐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직자로서 그러면 바른 자세였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1주일 에 세 번 간 게 아니고요, 1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요, 첫 과 목은 거의 말미에 들어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 것은 그냥 이유에 불과한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실제 그렇습니

○한정애 위원 그러한 상황에 저는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게 좀 대단하다, 그게 공무원들은 관행인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석사 과정 밟고 박사 과정 밟고…… 그 런데 민간에 그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과연 민간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가 쉽겠는가? 관 행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학력을 더 쌓고 하는 것들, 또는 어딘가에 전임강사로 나가고 시 간강사로 강의를 나가고 하는 것이 겸직 허용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민간에 비교를 해 봤 을 때 공무원 사회에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내용인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더 직 무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

○한정애 위원 전념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 월호 이후에는 관피아를 척결해야 되고, 공무원 들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이 돼야 됩 니다. 자기의 미래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겸직 허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부를 맡게 되 실 것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 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아파트 두 채, 주식, 예금, 2012 년 기준 신고된 자산이 11억 원인데 본인이 차관 그만두시고 한기대 총장으로 가시기까지 두 달 동안에 따님이 있었던 포천의 대경중학교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따님 앞으로 온 가족이 다 건강 보험 올려놓으신 적 있지요? 원래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것은 제가 실 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는 본인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보 가입 대 상이기는 한데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보험제 도를 아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저는 제가 신청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자동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동으로는 안 되지요, 실직이 되면 지역의보로 가게 되어 있지요. 본인이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수장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다른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산업재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지금 약 9만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정애 위원 어떻게 9만 1000건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산재 건이 약 9 만 1000건 정도······

○한정애 위원 그것은 산재 건수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4일 이상의 요양급여를 요하는 것이 9만 건 정도 된다는 것이고 실제는 몇 건입니까,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몇 건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혹시 은폐가, 빠져 있다라는 의미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지요, 저는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의 총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제가 위원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산재 건수하고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전혀 같지 않지요.

요양급여를 4일 이상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요양이 필요해도 그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런 취지라면 그 9만 1000건보다 더 많은……

○한정애 위원 몇 건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정확히 모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왜 다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부분 통계는

그렇지 않아도 산재통계를 이번에 보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한정애 위원 산재통계를 보완하는데,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OECD에서 최고의 산재 사망률이것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통계를 사용하는 방식에 막 꼼수를 부려 가지고 줄이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3월 25일자로 2012 년 산재통계 발표하면서 예규로 기존의 산재통계 기준을 변경해서 사망 노동자 수와 사망만인율을 하락시키는 숫자 줄이기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재해 중에 교통사고, 운수업, 음식·숙박 업이 되지요, 체육행사에서 다치거나 죽는 것 또 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사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고 사망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체 산재 사망자 수에서 평균적으로 한 300명 정도씩 빠져요. 이 런 것은 그냥 꼼수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셨냐하면 기존에는 요양급여 신청하신 것 가지고 보고제도 갈음했는데, 그런데 7월 1일부터 어떻게하셨냐 하면 이것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산재 발생 보고 기준인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바뀝니다. 휴업이에요, 휴업.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결근 같은 것을 해서 3일 이상은 회사에 못 나와야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재가 발생한 당일 날은 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재해를 낮추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만 산재가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치든, 그게 하루짜리든 두 시간짜리든 다친 것은 다친 거예요.

그 전체 것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부터 줄일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주**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산재통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실 건가요, 전임 것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통계 방식 개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정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2016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도 적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아닌 사람들은 다 건강보험으 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아프더라도……

건강보험에다 돈 내는 노동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산재 당한 환자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업무상 재해는 산재에서 치료를 하는데 은폐를 막기 위해서, 은 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 고....

○한정애 위원 지금 후보자는 잠깐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은폐를 얘기하 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 까 이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치 료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는 다 치료를 하고 업무상 재해를 보고하는 기준을 휴업 3일 이상으로 해 서....

○한정애 위원 업무상 재해를 다 어떻게 치료합 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 로, 왜냐하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산재통계부터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겠는데요.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 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런 말씀 하 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노동3권의 성역 없는 보장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한편에서는 맞는 방향이다 이 런 생각은 하시지요, 현실 여건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사회적인 어떤....

○**이인영 위원** 그것과 또 한 축으로 저는 굉장 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소통과 협치의 이런 문제 의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노동 현장에 서의 사회적 갈등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방향은 지 극히 정당하고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실질적으로 여쭤 볼게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고용노동부가 기획 재정부의 막냇동생이 아니다, 부부관계로 이야기 하면 남편과 같은 대등하고 동반적인 이런 관계 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하자' 그런 과정에서 '공공 기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 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이런 과정을 했으면 좋 겠다'이렇게 얘기할 때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이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 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 회적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 해야 맞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지금 당면해서 전교조 문제라든가 공무원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그 냥 갈등과 아니면 배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장관후보자의 철학대로 하면 소통하 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대화의 장 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 속 에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 씀하셨고, 지방청장 하시고 노무관 시절 해외 근 로자들을 파견해서 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현장 에서 그랬던 것을 굉장한 자부심과 보람으로 가 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을 그런 현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소통과 협치의 어떤 철학적인 본인의 소신의 방향과 매치를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일 것 같은데요. '너희 기브 업(give up)하라!' 이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장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해소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솔선수범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어떻든 모든 문 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당부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제가 그런 당부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명확하게 여쭈어 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영 위원 본인 말씀대로 하면 노사정을 가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로. 기재부한테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어떤 그런 노력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뒤의 문제는요? 전교조나 공 무원 노조나 뭐 등등……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문제는 오전 에도······

○이인영 위원 오늘 계속 쟁점이 됐는데 그 쟁점 상태로 놔둘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시려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래서 전교조 문제는 우선 국민들이 보기에 위법이 이렇게 있 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위법 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한번 진심으로 만나서 설 득을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게 하고 그다음에 다 른 문제는 또 협의를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방향이 '법 지켜라' 이런 방향 말고 법을, 제도를 바꿔 주는 방향이 같이 열려 서 얘기되지 않으면, 그게 사회적 대화입니까? 일방적 설득이지요. 그게 무슨 소통이고 협치입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 문제는, 법 개정 문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환노위에서 논의 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장관의 소신을 묻는데 무

슨 '환노위에서 잘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하십니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 는…… 차라리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지 '환노위 에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런 부분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의 일관성 속에서도 답을 못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 니까 보다 분명한 가치와 소신 속에서 행동을 해 주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위원님, 그 부 분은 98년도 교원노조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정 이 논의를 할 때······

○이인영 위원 그 앞의 과정들은 앞에 다른 위 원님들이 다 얘기하시고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안 하는 것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때 지금 틀로 노사정 합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굉장 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O이인영 위원 그 당시에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서 노사정 속에서 합의됐던 이런 정신도 지켜지지 않고 온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뭘 들으신 거예요?

이 정도에서 하겠는데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 과 행동, 실천하시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이 앞 에 하셨던 말씀들, 그것이 옳았건 글렀건 간에 글렀으면, 잘못됐으면 사과하시고 시정하시면 되 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냥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식으로 장관이 되셔서 하시면 그것은 정말 결격 사유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떻든 모든 문제를 당사자와 깊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기본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후 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최봉홍 위원님과 제가 서면질 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 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 기회 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 감, 각오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 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앞으로 고용노동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뜻깊은 충고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 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 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 각하시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여 겨집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리며 앞으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 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마음 깊이 새겨 고용노 동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서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노동 정책이 한 단 계 더 발전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 민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 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 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결산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는 국무위원에 임명되신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사항을 명심하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 제 중 노동공약 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근로자

생활 보장,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청년고 용 활성화 그리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한 열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기권 예.

○위원장 김영주 성실하게 추진하셔서 성공한 대통령도 만드시고 훌륭한 노동부장관이 되시기 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 관 이기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마 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 원 여러분, 한공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 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 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고하고 자리를 지켜 주신 권성 동 간사님, 문대성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양창 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최 봉홍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은수미 위원님, 장 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 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 영 주 문 대 성 민 혀 주 권 성 동 양 창 영 우 원 식 은 수 미 이 석 현 이 인 영 장 하 나 주 영 순 이자스민 최봉홍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공 식 전 문 위 김 양 건 원

○출석 공직후보자

이기권

○출석 참고인

류하경(변호사)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윤석(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합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